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1036-14

www.mifaff.go.kr

인삼산업법

2012. 1.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ww.mifaff.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000-001036-14

인삼산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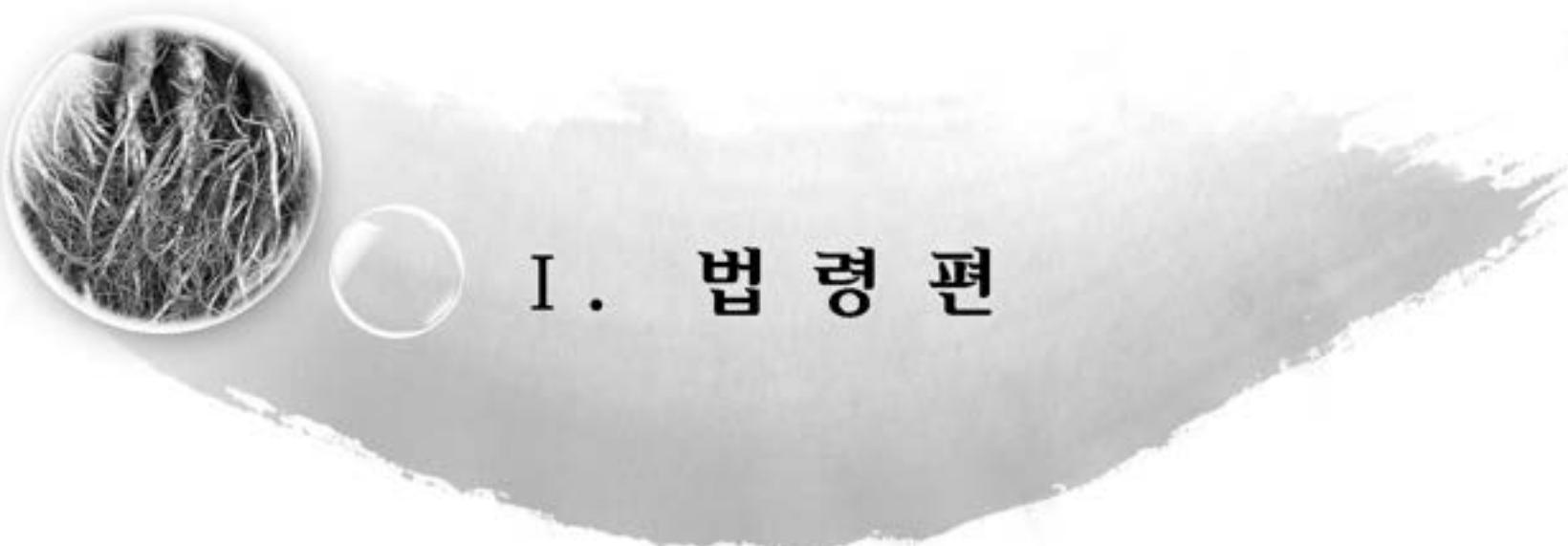
2012. 1.





총 목 차

I. 법령 편	1
1. 인삼산업법 목차	3
2. 인삼산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9
3. 인삼산업법 시행령 관련 별표	51
4.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57
5.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 별지	83
II. 고시 편	115
1.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117
2.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	129
3. 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등 압류 처분요령	145
4. 인삼종자 · 종묘검사 실시요령	157
5. 기타형태의 홍삼 검사기준	173
6. 기타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	177
7. 기타형태의 흑삼 검사기준	181



I. 법령편

인 삼 산 업 법 목 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0	제1조(목적) 10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10		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10 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11 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12
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12		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12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제4조(경작신고) 13		제3조(경작신고 등) 13
제5조 삭제 15		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14
제6조 삭제 15		제5조 삭제 15
제7조 삭제 15		제6조 삭제 15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15		제7조(사용금지농약·비료) 15
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16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1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제10조(계약경작 등) 18		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18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19		
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19		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19
	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20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20	
제13조 삭제 22		제11조(시설기준) 22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23		제12조 삭제 22
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24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24	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22
제16조(영업폐쇄 등) 25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23
		제15조(제조기준) 24
		제16조 삭제 25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 기준) 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제17조(검사) 26	제4조(검사의 예외) 26	제18조(검사의 신청등) 26 제18조의2 삭제 27 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28 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29 제19조(검사의 장소) 30 제20조(인삼종자·종묘의 검사) 31 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등) 31 제21조의2 삭제 33 제22조(검사수수료) 33 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35 제24조(압류 등) 36
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31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31	
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33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등) 36 제26조(검사원 교육) 38 제26조의2 38 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8
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35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36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36	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등) 40
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38		제29조 삭제 42
제18조 삭제 39		
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39		
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40		
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41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제30조 삭제 42
제21조 삭제 42		
제22조(고리인삼 등의 표시) 42		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42
제7장 삭제		
제23조 삭제 43		
제24조 삭제 43		
제25조 삭제 43		
제26조 삭제 43		
제27조 삭제 43		제32조 삭제 43
제8장 보칙		
제27조의2(청문) 43		
제28조(권한의 위임) 43		
제29조(조사 등) 44		
제30조 삭제 44		
제30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5		
제9장 벌칙		
제31조(벌칙) 45		
제32조(양벌규정) 47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33조(과태료) 47 부칙 <법률 제10948호, 2011.7.25>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7 부칙 <대통령령 제23536호, 2012.1.25>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2012.1.26>
제1조(시행일) 49	시행일 49	제1조(시행일) 49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49 부칙 <법률 제11099호, 2011.11.22>		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49
시행일 49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삼산업법	인삼산업법 시행령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p>제 정 1995.12. 6. 법률 제5022호 개 정 1996. 8. 8. 법률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7.12.13.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999. 1.21. 법률 제5664호 1999. 1.21. 법률 제5667호(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2000. 1.21. 법률 제6189호 2001. 1.26. 법률 제6380호 2001. 1.29. 법률 제6399호 2003.12.11. 법률 제6998호 2004.12.31. 법률 제727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007. 7.13. 법률 제8505호 2008. 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 2. 6. 법률 제9432호 2009. 5. 8. 법률 제9664호 2009. 6. 9. 법률 제9759호 2010. 3.17. 법률 제10123호 2011. 7.25. 법률 제10948호 2011.11.22. 법률 제11099호 2011. 7.21. 법률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 관리법)</p>	<p>제 정 1996. 6.29. 대통령령 제15087호 개 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해양수산부 와 그 소속 기관 직제)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등 의 개정령)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6호 2001. 6.22. 대통령령 제17242호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 민원 처리를 위한 가석방자 권리 규정 등 증개정령) 2004. 6.25. 대통령령 제18439호 2008. 1.11. 대통령령 제20539호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 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5호 2011. 8.30. 대통령령 제23109호 2012. 1.25. 대통령령 제23536호</p>	<p>제 정 1996. 7. 1. 농림수산부령 제1238호 개 정 1996.12.28. 농림부령 제1246호(농지법 시행 규칙 등 중개정령) 1999. 8. 7. 농림부령 제1337호 2000. 6.23. 농림부령 제1366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2001. 7.14. 농림부령 제1392호 2004. 6.30. 농림부령 제1477호 2005. 6.11. 농림부령 제1496호 2006. 4.13. 농림부령 제1522호 2008. 1.14. 농림부령 제1578호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농림 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 규칙)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 및 문서 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도시행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10. 5.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3호 2011. 8.3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0호 2012. 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장 총칙 <개정 2011.7.25></p>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인삼"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찌어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을 띠는 것을 말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1, 2006.4.13></p> <p>제1조의2(인삼류의 색상) ①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색·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색상"이란 담황색·백황색 또는 달갈색을 말한다.</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햅볕·열풍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p> <p>6. "그 밖의 인삼"이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인삼류"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것 모두를 말한다.</p> <p>8. "연근"(年根)이란 인삼이 출아(出芽)하여 자란 햇수를 말한다.</p> <p>9. "원산지"란 인삼이 생산된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p> <p>10. "인삼류제조"란 수삼을 원료로 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p> <p>11. "인삼제품류"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公典)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2.1.26]</p> <p>제1조의3(그 밖의 인삼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찌어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혹갈색 또는 흑다갈색을 띠는 것(이하 "흑삼"이라 한다) 그 밖에 수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p>[본조신설 2012.1.26]</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2.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조의4(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서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2.1.26]</p>
<p>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마련)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조(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1999.8.7, 2005.6.11, 2006.4.13, 2008.3.3, 2012. 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농촌진흥청소속 연구기관2. 삭제 <2004.6.30>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본조신설 2011.7.25]</p>		<p>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삼제품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인삼류 연구기관</p>
<p>제2장 인삼 경작 및 수확 <개정 2011.7.25></p> <p>제4조(경작신고) ①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p>		<p>제3조(경작신고 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의 경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삼식재 전년도 9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서에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경작지를 관할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5.6.1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작지를 관할하는 조합에 상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지를 상속하거나 양수한 자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작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		<p>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경작면적2. 식재연도3. 경작지의 위치 <p>③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경작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서에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1999.8.7]</p> <p>제4조(인삼경작 승계의 신고)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지의 상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속·양수 또는 합병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경작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11.7.25]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삼경작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7]
제5조 삭제 <1999.1.21>		제5조 삭제 <1999.8.7>
제6조 삭제 <1999.1.21>		제6조 삭제 <1999.8.7>
제7조 삭제 <1999.1.21>		
제8조(경작방법 및 지도 등) ① 농촌진흥청 장은 인삼경작자의 소득 증진과 인삼류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표준인삼경작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인삼경작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작방법에 따라 경작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수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농약 및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 경제배(水耕栽培)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 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금지농약·비료) 법 제8조제3항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비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12. 28, 2001.7.14, 2005.6.11, 2008.3.3, 2010.5. 20, 2012.1.26>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7조의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전문개정 2011.7.25]		<p>규정에 의하여 인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되지 아니한 농약</p> <p>2. 질소·인산·가리성분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p> <p>3. 삭제 <2001.7.14></p>
<p>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인삼경작자가 5년근 이상의 수삼을 수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연근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검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참여하여 수삼의 연근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근확인의 방법과 절차 및 검사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등 연근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8조(수삼의 연근확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삼의 연근확인신청을 하려는 자는 수확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p> <p>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확에 입회하도록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수확대상 경작지의 식재연도가 연근확인 신청서상의 식재연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수확대상 경작지에 최초 식재연도이후 연근이 다른 인삼이 이식되었는지의 여부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수확에 입회한 포장에서 재배된 것인지의 여부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연근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삼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p> <p>③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7.14, 2008.3.3></p> <p>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또는 조합에서 2년이상 인삼경작지도 및 인삼제조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p> <p>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인삼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중앙회 또는 조합의 직원</p> <p>④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근확인에 필요한 연근판별 세부기준은 별표 3의2에 따른 검사기준중 연근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장 계약경작 및 수급조절 <개정 2011.7.25></p> <p>제10조(계약경작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삼의 수급조절(需給調節)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약경작을 권장 및 알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인삼경작자와 생산자단체 사이의 계약경작2. 인삼경작자와 인삼 제조업자·가공업자 사이의 계약경작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경작의 권장·알선과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⑤ 중앙회장은 연근확인을 한 수삼의 포장별 봉인 및 표시방법 기타 연근확인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1999.8.7]</p> <p>제9조(계약경작사업비의 우선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996.12.28,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량묘삼의 생산자금 2. 인삼식재에 필요한 자금 3. 농기계 및 경작자재의 구입자금 4. 인삼경작지의 관리에 필요한 자금 5. 가공시설자금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p>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하여 비축(備蓄)-방출하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4장 인삼류 등의 제조 <개정 2011.7.25></p> <p>제12조(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① 인삼류제조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製造場)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p>		<p>제10조(인삼류제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등신고서에 시설내역서(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自家製造)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08.11.18, 2012.1.26></p>
<p>② 제1항에 따라 홍삼, 태극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 사항 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또는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2조(인삼류제조업자의 중요변경신고사항)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또는 제조장의 소재지 4. 제조하는 인삼류 	
<p>④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p>	<p>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p>	<p>②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⑥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p> <p>⑧ 시장·군수는 인삼류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p>	<p>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사포닌이 그 램당 8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可溶性) 홍삼성분(홍삼사포닌이 그 램당 70밀리그램 이상의 비율로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p>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 신고필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8></p> <p>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7.14]</p> <p>[제목개정 2008.1.14]</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⑨ 제8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1조(시설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6></p> <p>[전문개정 1999.8.7]</p>
제13조 삭제 <1999.1.21>		<p>제12조 삭제 <1999.8.7></p> <p>제13조(인삼류제조업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10.5.20, 2012.1.26></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삼류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인삼류제조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인삼류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제1항에 따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함께 신고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인삼제품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체 없</p>		<p>[전문개정 1999.8.7] [제목개정 2001.7.14, 2012.1.26]</p> <p>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에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를 함께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따른</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1, 2011.8.30></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납부받은 수수료와 함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1.7.14]</p>
<p>제15조(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해당 제품이나 그 용기·포장 등에 해당 연근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p> <p>[본조신설 2008.1.11]</p>	<p>제15조(제조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삼, 태극삼, 백삼 및 흑삼의 제조기</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직원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8.7, 2012.1.26> [제목개정 1999.8.7]</p> <p>제16조 삭제 <1999.8.7></p>
<p>④ 제3항의 경우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6조(영업폐쇄 등) ① 시장·군수는 인삼류 제조와 관련하여 인삼류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p> <p>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p> <p>3.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였을 때</p> <p>4.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하였을 때</p> <p>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1999.8.7]</p>
<p>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p> <p>제17조(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거나 농림수산</p>	<p>제4조(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p>	<p>제18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가제조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1.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한 자</p> <p>2.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한 수집자</p> <p>3.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p> <p>②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그 검사실적을 검사기록서에 기록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p>	<p>자가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중량·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인삼제품류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6.25, 2008.1.11></p>	<p>별지 제13호서식의 인삼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4.6.30,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다)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사본(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p>제18조의2 삭제 <2001.7.14></p> <p>② 인삼류검사기관과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할 검사기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관리대장 : 별지 제13호의2서식 2. 검사필증수불대장 : 별지 제13호의3서식 3. 원산지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4서식 4. 농약잔류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5서식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 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등에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의 경우에는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인삼류검사기관과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는 검사수량과 검사성적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5. 미생물검사대장 : 별지 제13호의6서식 [전문개정 1999.8.7]</p> <p>제18조의3(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의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등의 기준·방법은 별표 3의2와 같다. 다만, 수출입하거나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흑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 2008.3.3, 2012. 1.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의 경우 : 수출상대국 또는 수출상 대방의 요청(수입면장 등)에 의하여 검사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가 별표 3의2의 검사중 원산지 및 연근검사외의 검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수입의 경우 : 수입 인삼류의 체형 및 특성등에 비추어 별표 3의2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면세점 판매의 경우: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는 절편 인삼류에 대하여 별표 3의2 제2호나목4)의 표시검 사기준에도 불구하고 등급을 정하여 표시 할 수 있다.</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세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1.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른 면세점 3.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 용 판매장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지 정면세점 <p>[전문개정 1999.8.7]</p> <p>[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21조로 이동 <2008.1.14>]</p> <p>제18조의4(품질보증기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검사일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제조일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1.14, 2012.1.26></p> <p>1.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홍삼·태극삼 및 흑삼은 10년이내</p> <p>2. 진공포장하지 아니한 백삼은 2년이내, 진공포장한 백삼은 3년이내</p> <p>[전문개정 1999.8.7]</p> <p>[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2008.1.14>]</p> <p>[제목개정 2008.1.14]</p> <p>제19조(검사의 장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 2012.1.26></p> <p>1. 홍삼중 홍삼본삼·원형홍삼, 태극삼중 태극본삼, 흑삼 중 흑삼본삼 및 수출입 인삼류 : 제조장 또는 영업소</p> <p>2. 제1호에 따른 인삼류 외의 인삼류 :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p> <p>[전문개정 1999.8.7]</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⑥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그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1조에서 이동, 총전 제19조는 제18조의3로 이동 <2008.1.14>]</p> <p>제20조(인삼종자·종묘의 검사) ①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으로부터 인삼의 종자 또는 종묘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8.7]</p> <p>[제18조의4에서 이동, 총전 제20조는 제18조의4로 이동 <2008.1.14>]</p>
<p>제17조의2(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자가제조하여 검사를 받은 실적과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갖추어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등 인삼의 종류별 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아야 한다.</p>	<p>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1.11></p>	<p>제21조(자체검사업체의 지정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검사업체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8.1.14, 2010.5.20, 2011.8.30></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업체"라 한다)는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출용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는 자가상표(自家商標)를 붙이고 자체검사를 할 수 있다.</p>		<p>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사본 2. 인삼류 품질관리시설 및 인력내역 3.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 1부</p> <p>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업체지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삼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4, 2006.4.13, 2008.3.3></p>
<p>③ 자체검사업체는 지정받은 시설이나 인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③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자체검사업체지정취소의 통지 및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7.14, 2008.1.14></p> <p>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제18조의3에 따른 검사의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14></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7조의3(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자체검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검사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삼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p>1. 품목별, 연근별 제조실적 및 자체검사성적 2. 수삼연근확인서(5년근이상의 경우에 한다) 3. 농약잔류검사, 이화학성분검사 및 미생물검사의 성적 [본조신설 1999.8.7]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1.14>]</p> <p>제21조의2 삭제 <2004.6.30></p> <p>제22조(검사수수료)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 [전문개정 1999.8.7]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1.14>]</p>

법 경우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 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p> <p>4.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가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5. 이 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p> <p>6. 이 조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에 검사를 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없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에 대한 시정명령·검사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7조의4(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p> <p>②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품을 압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3조(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중인 검사합격품을 수거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30, 2008.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거·폐기 :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2. 재검사 : 농약잔류허용기준외의 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연근검사착오율 등이 별표 5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때 <p>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시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4></p> <p>④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명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검사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자체검사업체에 시정조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7조의5(검사원의 자격 등) ① 인삼류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인삼의 품질관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등을 명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6.30, 2008.1.14, 2008.3.3> [전문개정 1999.8.7] [제26조에서 이동 <2008.1.14>] 제24조(압류 등)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 소속공무원은 법 제17조의4제2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품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② 압류한 물품의 처분절차·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6.30] [제26조의2에서 이동 <2008.1.14>]
		제25조(검사결과의 표시등) ①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8.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화학·농학·식품공학·영양학 또는 약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2. 국·공립연구기관, 인삼류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인삼류제조업체·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본조신설 2004.6.25]</p>	<p>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또는 자체검사필증을 붙이거나 인쇄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의 검사에 합격한 것에 대하여는 검사증지 대신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에 봉인을 하고 검사일부인을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04.6.30, 2008.1.14></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지, 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부착방법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자체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4.6.30></p> <p>③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검사수량 및 검사성적서는 매 반기의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p> <p>[전문개정 1999.8.7]</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시간과 소요 경비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2조에서 이동 <2008.1.14>]</p> <p>제26조(검사원 교육) ①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내용은 인삼류 검사기법·안전성확보 및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연간 6시간 이상으로 한다.</p> <p>②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08.1.14]</p> <p>[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1.14>]</p> <p>제26조의2 [종전 제26조의2는 제24조로 이동 <2008.1.14>]</p>
<p>제17조의6(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한 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검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의6에 따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검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해당검사를 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30, 2008.1.14></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11.7.25]</p> <p>제18조 삭제 <2009.6.9></p> <p>제19조(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은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p>		<p>②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또는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1999.8.7]</p> <p>[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1.14>]</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불합격 된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수출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 중인 것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압류하게 하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제품의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는 자는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압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0조(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① 삭제 <1999.1.21></p> <p>②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인삼류를 양허세</p>		<p>제28조(수입부담금의 납입등) ① 삭제 <1999.8.7></p> <p>② 삭제 <1999.8.7></p> <p>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수입한 인삼류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율(讓許稅率)로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p> <p>③ 제2항에 따라 인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5></p> <p>[제목개정 2011.7.25]</p>		<p>판매수입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해당 인삼류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 및 판매수수료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12.28, 2008.3.3></p> <p>④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인삼류를 수입한 자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8, 2000.6.23, 2001.7.14, 2005.6.11, 2008.3.3></p> <p>[제목개정 1999.8.7]</p>
<p>제20조의2(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p> <p>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p> <p>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p> <p>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p> <p>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1.11.22]</p> <p>[시행일 : 2012.5.23]</p>		<p>제29조 삭제 <2001.7.14></p> <p>제30조 삭제 <2000.6.23></p>
<p>제6장 인삼류의 표기 등 <개정 2011.7.25></p> <p>제21조 삭제 <1999.1.21></p> <p>제22조(고려인삼 등의 표시)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삼"·"고려홍삼"·"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 (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하</p>		<p>제31조(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제4항·제17조의4제3항·제19조제5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직원 및 소속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리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14></p> <p>[전문개정 2004.6.30]</p>
<p>제7장 삭제 <2000.1.21></p>		
<p>제23조 삭제 <2000.1.21></p>		
<p>제24조 삭제 <2000.1.21></p>		
<p>제25조 삭제 <2000.1.21></p>		
<p>제26조 삭제 <2000.1.21></p>		
<p>제27조 삭제 <2000.1.21></p>		<p>제32조 삭제 <2000.1.21></p>
<p>제8장 보칙 <개정 2011.7.25></p>		
<p>제27조의2(청문)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p>[전문개정 2011.7.25]</p>		
<p>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 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29조(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인삼제조업자·수집자·수출입업자·판매업자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시설·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30조 삭제 <2001.1.26></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른 연근학인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의 임원·직원과 제17조제1항·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인삼류검사기관 및 인삼종자·종묘검사기관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7.25]</p>		
<p>제9장 벌칙 <개정 2011.7.25></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조사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근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p> <p>2.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한 자</p> <p>3.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직원의 제조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4.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5.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전문개정 2011.7.25]</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10.3.17]</p> <p>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인삼류제조업자 	<p>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전문개정 2010.2.8]</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 을 제조·판매한 자</p> <p>5.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 하지 아니한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 업체</p> <p>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쇄 하지 아니하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자</p> <p>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p> <p>8.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9.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자체검사업체</p> <p>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립</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7.25]</p> <p>부칙 <법률 제10948호, 2011.7.2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부칙 <법률 제11099호, 2011.11.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대통령령 제23536호, 2012.1.25></p> <p>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53호, 2012.1.26></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흑삼 제조업자의 제조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흑삼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p>

인삼산업법 시행령 관련 별표

- [별표 1]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 53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55

자체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등의 기준(제5조관련)

1. 시설

가. 제조장의 시설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조장은 인삼류 제조시에는 인삼류 제조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삼제품류 및 약사법에 의한 인삼제제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그 보관장소는 각각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나. 검사장은 66m² 이상의 전용검사장이 설치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의 검사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이화학적 검사기구

- (가) 화학천칭(최소측정 단위가 0.1mmg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나) 건조기(최고온도 조절범위가 200±3°C인 것에 한한다)
- (다)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 (라)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마) 비색계(Spectrophotometer방식의 것에 한한다)
- (바) 저온냉동고(최저온도 조절범위가 -20°C 이하인 것에 한한다)
- (사)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ICP기종 또는 AA기종의 것에 한한다)
- (아) 회전감압농축기
- (자) 조분쇄기
- (차) 수분측정기(전기저항식·전열전조식 또는 적외선 조사식의 것에 한한다)

(2) 생물학적 검사기구

- (가) 배양기
- (나) 고압살균기(최고압력 범위가 15파운드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다) 현미경(최고확대 배율이 600 이상인 것에 한한다)
- (라) 세균계수기

다. 나목의 (1)에 규정한 검사기구중 다음의 것에 대하여는 제3자의 검사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검사기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과 문서로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품질에 관한 최종책임은 제조업자에게 있다.

- (1) 화학천칭(최소측정 단위가 0.1mmg 이하인 것에 한한다)
- (2)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 (3)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4) 비색계(Spectrophotometer방식의 것에 한한다)
- (5) 무기원소분석기(HPIC기종·ICP기종 또는 AA기종의 것에 한한다)
- (6) 회전감압농축기

2. 조직 및 인력

- 가. 제조업자는 제조장에 제조관리부서와 검사관리부서를 두되, 이를 부서의 관리책임자는 1인으로 할 수 있다.
- 나. 원료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관리부서 또는 검사관리부서에 제5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과 제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검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설적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인삼의 종류별로 자가제조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실적이 홍삼이나 백삼은 본삼류 2톤 이상을 포함하여 3톤 이상, 태극삼은 본삼류 2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인삼의 종류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조관리 및 기타

- 가. 인삼류의 제조관리 및 검사관리업무를 적정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할 기준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제조관리기준서
- (2) 검사관리기준서

- 나. 제조관리기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조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 (2) 시설 및 기구관리에 관한 사항
- (3) 원료관리에 관한 사항
- (4) 반제품·완제품 및 검사품 등을 연근별로 구분한 제품관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품명·제형 및 성상에 관한 사항
- (6) 작업중 주의할 사항
- (7)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검사관리기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료 및 제품의 시험기록(시험항목·시험성적·판정결과·시험자·시험일)
- (2) 검체의 체취량·체취장소 및 체취방법
- (3)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 라. 소비자의 불만 처리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인삼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보상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에서 이를加重할 수 있다. 다만,加重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다.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제조·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증 또는 결사증지를 불이지 않거나 인쇄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삼을 판매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아.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자.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별표 1]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	59
[별표 2] 인삼류의 제조기준	60
[별표 3]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	67
[별표 3의2] 검사의 기준·방법	68
[별표 4]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	79
[별표 4의2] 검사수수료	81
[별표 5] 재검사명령기준	82

[별표 1] <개정 2012.1.26>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제조업의 시설기준(제11조관련)

1. 일반기준

제조·보관시설, 작업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의 구조·위치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구분	세부시설항목		
	공통	홍삼·흑삼	태극삼
가. 건물	<input type="radio"/> 작업실, 세척실, 관리실 등 <input type="radio"/> 저온창고 또는 일반창고 <input type="radio"/> 건조실 <input type="radio"/> 검사실	<input type="radio"/> 중삼실	<input type="radio"/> 중삼실 또는 열탕실
나. 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input type="radio"/> 세삼장치 <input type="radio"/> 건조기	<input type="radio"/> 중삼기 <input type="radio"/> 가습·압착기	<input type="radio"/> 중삼기 또는 열탕처리기
다. 품질관리 기구	<input type="radio"/> 계량기 <input type="radio"/> 수분측정기	<input type="radio"/> 삼체조직검사장치 (홍삼내공·내백판별용)	해당없음

인삼류의 제조기준(제15조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제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머리"라 함은 뿌리인삼의 뇌두(腦頭) 또는 노두(蘆頭)를 말한다.
- 나. "몸통"이라 함은 인삼뿌리의 동체(胴體) 또는 주근(主根)을 말한다.
- 다. "다리"라 함은 몸통에 붙은 지근(支根)을 말한다.
- 라. "세미(細尾)"라 함은 본삼을 제외한 잔뿌리를 말한다.
- 마. "본삼(本蔘)"이라 함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으로 세미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바. "미삼(尾蔘)"이라 함은 머리와 몸통에서 분리된 다리부분과 세미를 말한다.
- 사. "균열(龜裂)"이라 함은 인삼이 갈라진 상태를 말한다.
- 아. "내공(內空)"이라 함은 몸통 또는 다리 내부에 공간이 생긴 것을 말한다.
- 자. "내백(內白)"이라 함은 홍삼·태극삼 및 흑삼의 몸통 또는 다리내부에 갈색화 되지 아니한 회백색의 부분이 생긴 것을 말한다.
- 차. "적변삼(赤變蔘)"이라 함은 인삼의 표피가 붉게 변한 삼을 말한다.
- 카. "입도(粒度)"라 함은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 타. "백피(白皮)"라 함은 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으로 제조하였을 때 갈색화되지 아니한 회백색의 표피를 말한다.
- 파. "면삼(眠蔘)"이라 함은 휴면(休眠)한 삼을 말한다.
- 하. "박피(剝皮)"라 함은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말한다.
- 거. "피해삼(被害蔘)"이라 함은 병해삼·썩은 삼·주름삼·균열삼 및 기계적 손상삼증에서 그 피해정도가 삼표면의 1/3미만인 것을 말한다.
- 녀. "등외품"이라 함은 피해삼증 그 피해정도가 1/3이상 2/3미만인 것을 말한다.
- 더. "쇄삼(碎蔘)"이라 함은 절편삼 또는 절삼에서 탈락된 삼중 6밀리미터인 체로 쳐서 체 위에 남는 것을 말한다.
- 려. "설삼(屑蔘)"이라 함은 절편삼 또는 절삼에 탈락된 삼중 6밀리미터인 체로 쳐서 통과 하는 것을 말한다.
- 미. "이형삼(異形蔘)"이라 함은 홍삼, 태극삼, 흑삼 또는 백삼내에서 직삼, 곡삼, 반곡삼 등 두 가지 이상 등급이 혼합되어 있는 인삼을 말한다.
- 비. "온피삼(隱皮蔘)"이라 함은 재배증에 생리장애로 인하여 표피가 거칠게 변하여 내용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흑갈색의 터가 생기거나 속이 빈삼을 말한다.

2. 인삼류의 제조기준

가. 일반수칙

- (1) 인삼류의 제조·가종업자는 원료,제품 및 제조공정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인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결과 타인과 인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제조·가공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 (3) 인삼류의 제조·가공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특히 제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살균·멸균작업공정등에 종사하는 자는 위생모와 위생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4) 손과 신발을 씻고 소독할 수 있는 위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5) 위생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살균, 멸균작업 또는 밀봉확인검사등에 대한 작업기록을 작성하여 최소한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6) 제조·가공업소 밖으로 출하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기준 기타 인삼산업 관련법령에 적합한지를 재점검하여야 한다.
- (7) 원료 등의 구비요건
 - (가) 원료인삼은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폐·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인삼류의 제조·가공원료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고 먹는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제품목적에 필요하지 아니한 먹을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 (다) 인삼류의 용기·포장은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신고를 한 업소에서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 (라)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제조기준

- (1) 일반공통기준
 - (가) 원료삼·중간제품 및 완제품은 연근이 다른 인삼류가 서로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근별로 구분한 후 표시하여 보관하고, 수불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나) 건조작업시 제품에 직접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건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인삼류의 제조·가공 및 조리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라) 인삼류의 제조·가공·보존 및 유통 중에는 인체 유무해와 관계없이 합성보존료, 표백제, 인공색소, 증량제, 물엿, 당류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품특성상 사용하여야 하는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상온에서 장기보존이 어려운 인삼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냉장, 냉동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한다.
 - (바) 인삼제조·가공중 열처리, 냉각 또는 냉동공정은 제품의 영양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인삼류별 제조공정 및 규격

(가) 홍삼

- 1) 홍삼은 홍삼본삼, 원형홍삼, 홍미삼류 및 기타 홍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 가) 홍삼본삼은 머리와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나) 원형홍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홍미삼류는 제조된 홍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라) 기타 홍삼류는 절삼홍삼, 절편홍삼 및 분쇄홍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홍삼분삼

-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
- ② 중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쪘서 익힌다.
- ③ 삼채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④ 별표 3의2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이하 "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 한다.
-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원형홍삼

- 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
-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홍미삼류

- ① 원료미삼은 가)의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홍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을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② 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기타 홍삼류

- ① 절삼홍삼은 홍삼분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홍삼은 홍삼분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 ③ 분쇄홍삼은 홍삼분삼 및 홍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규격기준
중절홍삼	○ 2mesh(1110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홍삼	○ 10mesh(19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홍삼	○ 20mesh(864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④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태극삼

- 1) 태극삼은 태극분삼, 원형태극삼, 태극미삼류 및 기타 태극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가) 태극분삼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나) 원형태극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태극미삼류는 제조된 태극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 라) 기타 태극삼류는 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및 분쇄태극삼을 말한다.
- 2) 품목별 제조기준
- 가) 태극본삼
-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 한다.
 - ② 열수처리장치에서 물로 익힌다.
 - ③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 나) 원형태극삼
- ① 원료수삼을 가)의 ① 내지 ③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유지되도록 제조한다.
 -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구분	규격기준
중절홍삼	○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홍삼	○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홍삼	○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다) 태극미삼류
- ① 원료미삼은 가)의 ①,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태극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은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② 계량하여 포장한다.
- 라) 기타 태극삼류
- ① 절삼태극삼은 태극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태극삼은 태극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 ③ 분쇄태극삼은 태극본삼 및 태극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규격기준
중절태극삼	○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태극삼	○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태극삼	○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④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백삼

1) 백삼은 백삼본삼, 백미삼류, 잡삼류 및 기타 백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가) 백삼본삼은 머리,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나) 백미삼류는 제조된 백삼으로부터 분리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여, 크기에 따라 대미(피대미), 중미(피중미) 및 세미로 구분 된다.

다) 잡삼류는 생건삼, 춘미삼 및 파삼을 말한다.

라) 기타 백삼류는 절삼백삼, 절편백삼, 분쇄백삼 및 원형백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백삼본삼

① 직삼은 직립형태의 것 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② 곡삼은 다리부분과 몸통의 일부까지 구부려 둥글게 말아감은 것 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③ 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려 반곡형태로 말아감은 것 중 표피가 제거된 것을 말한다.

④ 피부직삼은 직립형태의 것 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⑤ 피부곡삼은 다리부분은 물론 몸통의 일부까지도 구부려 둥글게 말아감은 것 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⑥ 피부반곡삼은 다리부분을 구부려 반곡형태로 말아감은 것 중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⑦ 기타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에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몸통에서 다리외의 결뿌리 및 잔뿌리를 제거한다.

ⓒ 직삼, 곡삼 및 반곡삼의 경우 표피를 제거한다.

ⓓ 곡삼, 반곡삼 피부곡삼 및 피부반곡삼의 경우는 삼체의 수분함량이 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구부린다.

ⓔ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백미삼류

① 백미삼은 제조된 백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② 표피를 제거한 것은 크기에 따라 백대미와 백중미로 구분한다.

③ 표피가 제거되지 아니한 것은 크기에 따라 피대미, 피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다) 잡삼류

① 생건삼은 표피·머리의 형태가 피부본삼과 유사하나 몸통의 직경이 10mm 미만이며 개체당 무게가 6g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② 춘미삼은 표삼을 건조한 것을 말한다.

③ 파삼은 인삼의 원형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병충해 등의 피해정도가 삼체표면의 2/3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기타 백삼류

- ① 절삼백삼은 백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백삼은 백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 ③ 분쇄백삼은 백삼본삼 및 백미삼을 과쇄기 등으로 과쇄한 것을 말하며, 과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규격기준
중절백삼	○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백삼	○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과쇄백삼	○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④ 원형백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잔뿌리가 수삼상태 그대로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건조한 것을 말하며, 세부적인 제조방법은 아래와 같다.
 - ⓐ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한다. 세척시는 60분 이상 물에 침지시켜서는 아니된다.
 - ⓑ 50°C이하의 온도에서 일정시간 건조한 다음 고유한 형태로 만든다.
 - ⓒ 삼체의 수분함량이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 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흑삼

- 1) 흑삼은 흑삼본삼, 원형흑삼, 흑미삼류 및 그 밖의 흑삼류로 분류하여 제조한다.
 - 가) 흑삼본삼은 머리와 몸통 및 다리부분이 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나) 원형흑삼은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다) 흑미삼류는 제조된 흑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 또는 잔뿌리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대미, 중미 및 세미로 구분한다.
 - 라) 그 밖의 흑삼류는 절삼흑삼, 절편흑삼 및 분쇄흑삼을 말한다.

2) 품목별 제조기준

가) 흑삼본삼

- ① 원료수삼을 선별·세척하여 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크기별로 구분한다.
- ② 중삼장치에서 수증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쪘서 익히고 건조하는 과정을 3회 이상 반복한다.
- ③ 삼체의 수분함량은 15.0% 이하가 되도록 건조한다.
- ④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⑤ 계량하여 포장한다.

나) 원형혹삼

- ① 원료수삼을 가) ①부터 ③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도록 제조한다.
- ②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③ 계량하여 포장한다.

다) 흑미삼류

- ① 원료미삼은 가) ① 및 ②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흑삼으로부터 분리한 다리부분 및 잔뿌리 등을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가공·선별한다.
- ② 계량하여 포장한다.

라) 그 밖의 흑삼류

- ① 절삼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로 2등분하여 절단한다.
- ② 절편흑삼은 흑삼본삼을 가로·세로 또는 경사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 ③ 분쇄흑삼은 흑삼본삼 및 흑미삼을 파쇄기 등으로 파쇄한 것을 말하며, 파쇄한 크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	규격기준
증절흑삼	○ 2mesh(111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세절흑삼	○ 10mesh(1900 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파쇄흑삼	○ 20mesh(864 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 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인 것

- ④ 계량하여 포장한다.

[별표 3] <개정 2010.5.20>

영업의 폐쇄명령·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인삼류제조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회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16조 제1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또는 영업폐쇄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조방법을 위반하거나 연근 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조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폐쇄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16조 제1항제4호	영업폐쇄		

검사의 기준·방법(제18조의3 관련)

1. 용어의 정의

인삼류의 검사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2 제1호(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2. 인삼류의 검사기준

가. 일반검사기준

- 1) 수분 : 15.0% 이하일 것
- 2) 벤조피렌(혹삼에만 해당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혹삼의 벤조피렌 기준에 의할 것
- 3) 중금속: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에 따른 인삼의 중금속 기준 중 증한 기준에 의할 것
- 4) 회분 : 5% 이하(미삼류의 경우에는 6.0% 이하)일 것
- 5) 농약잔류허용기준: 「농산물품질 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의할 것
- 6) 이물: 인삼류는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세척 등으로 제거가 가능한 이물과 제조과정에서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 7) 보존료, 인공색소 및 표백제가 검출되지 아니할 것
- 8) 세균수: 50,000/g 이하이어야 하며, 진공 포장한 제품은 3,000/g 이하일 것
- 9) 대장균군이 음성일 것
- 10)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일 것
- 11) 인삼성분
 - 가) n-부탄올추출물(조사포년)의 함량(%)

본삼류	대미·중미류 및 분쇄인삼	세미류
2.0 이상	3.0 이상	5.0 이상

나) 물은 에탄올추출물의 함량 : 18.0% 이상

12) 진세노사이드 함량(혹삼을 제외한다): Rg1 0.10% 이상, Rb1 0.20% 이상일 것

나. 개별검사기준

1) 연근검사

가) 검사항목

삼종	검사항목
홍삼·태극삼 및 혹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
백삼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및 6년근 판별

나) 연근기준

연근검사의 기준은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시 나 이데 등을 육안 또는 발색시켜 다음 기준을 참작하여 판별한다. 다만, 연근이 다른 인삼이 혼입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근분류를 요청하되, 신청인이 혼입된 채로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낮은 연근으로 판별한다.

항목 연근	머리의 형태	동체·표피의 형태	다리부분의 발달정도
4년근	머리가 짧고 가늘며 2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현저히 미달하고 표피가 얇음	다리가 몸통보다 현저하게 짧음
5년근	머리가 4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3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고 표피가 약간 두꺼움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6년근	머리가 5년근에 비하여 굵고 길며 4개 이상의 명확한 줄기(莖)흔적이 있음	몸통의 지름이 몸통길이의 1/2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며 표피가 두꺼움	다리와 몸통이 균형을 이룸

2) 품질검사

가) 홍삼

(1) 직삼

등급 항목	1등(천)	2등(지)	3등(양)	
① 체형	머리	몸통 굵기와 비슷하며 전실한 것		
	몸통	길이 3.5cm 이상 균열과 흡집이 없는 것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 수분(%)	15.0 이하			
③ 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머리길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되, 뇌두길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이 몸통길이의 1/3 이하이거나, 내공이 몸통길이의 1/2 이하인 것	
④ 색택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놓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한 것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놓다갈색을 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 표피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	윤기있는 색택으로 황피·백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황피·백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⑥ 기타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2) 원형홍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반곡삼·그 밖의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그 밖의 형태의 홍삼은 습점·압착·재건조 과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흥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항목	대 미			중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직경 (mm)	6 이상			4 ~ 6			4 미만		
②길이 (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③균열 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	제한 없음	
④내공 · 내백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수분(%)	15.0 이하								
⑥ 이형삼회 흔입률 (%)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피해삼(%)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10미만	30미만	제한 없음

(5) 기타 홍삼류(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항목	구분	절삼홍삼	절편홍삼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①외관 및 성상		뇌두, 동체, 다리, 색택, 표피조직이 천, 지, 양삼에 미 달되는 것으로 내 백이 동체의 1/2 이하이며 중간부분 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 · 내백의 가 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피 · 균열과 절단불량 품이 없으며 고유 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 과 향취를 가 진 것
②절단면		해당 없음	타원형 또는 원형 이며 평활한 것		해당 없음	
③임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μm) 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 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μm) 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μm) 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μm) 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 (117μm)체 위 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④절단 두께 (mm)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⑤수분 (%)				15.0 이하		

* 비고 :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태극삼

(1) 직삼

항목	구분		1 등(송)	2 등(죽)			3 등(매)		
	머리 및 몸통	다리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통이 건실하고 균형정도가 등 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다리가 없거나, 있는 경우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삼 흔입율(%)	5 이하								제한 없음
④색 택	담황색 · 백황색 또는 담갈색								
⑤표 피	황피 · 백피가 전체 면적의 1/4 이하일 것								제한 없음
⑥머리탈락삼 흔입율(%)	없을 것								10 이하
⑦기 타	내용조직이 충실히 고유의 향취를 가진 것								

(2) 원형태극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여, 머리 · 몸통 · 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 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 · 반곡삼 · 기타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여, 체형 · 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태극미삼류

항목	대 미			중 미			세 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직경(mm)	6 이상			4 이상 6 미만			4 미만		
②길이(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③균열 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수분(%)	15.0 이하								

(5) 기타 태극삼류(절삼태극삼, 절편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구분 항목	절삼태극삼	절편 태극삼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①외상 및 성상	1, 2등에 미달 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 을 가로로 자 른 것	고유의 색상 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 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 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 취를 가진 것
②절단면	해당 없음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 활한 것		해당 없음	
③임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μ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 mesh(864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μ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④절단 두께(mm)	해당 없음	5 이하		해당 없음	
⑤수분 (%)			15.0 이하		

다) 백삼

(1) 본삼류(직삼, 곡삼, 반곡삼, 피부직삼, 피부곡삼, 피부반곡삼)

구분 항목	1 등(송)	2 등(죽)	3 등(매)	
①외관 및 성상	머리 및 몸체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 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실하고 균 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 및 몸체가 건 실하고 균형정도가 등외 표준품 이상일 것
	다리	직삼 이상의 경우에는 1개부터 3개까지의 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 길이가 몸통길이의 2/5 이상일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삼 흔입율(%)	5 이하	10 이하	제한 없음	
④머리탈락삼 흔입율(%)	없을 것	10 이내	제한 없음	
⑤색택	유백색, 난백색 또는 담황색으로 광택이 있어야 한다.			
⑥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삼의 경우 부착미삼은 2mm 이상이어야 한다. ○ 피부백삼이 아닌 경우에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내용조직이 충실히여야 한다. ○ 은피상은 제외한다. 			

※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
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2) 백미삼류((과)대미, (과)중미, 세미)

항목	(과) 대 미		
	1등	2등	3등
①직경(mm)	6 이상		
②길이(mm)	20 이상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피해율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 대미 : 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색 ○ 피대미 : 담황색	○ 대미 : 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색 ○ 피대미 :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 대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대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⑦수분(%)	15.0 이하		

항목	(과) 중 미		
	1등	2등	3등
①직경(mm)	4~6		
②길이(mm)	20 이상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피해율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 중미: 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색 ○ 피중미: 담황색	○ 중미: 유백색 · 난백색 또는 담황색 ○ 피중미: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 중미는 탈피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피중미는 표피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⑦수분(%)	15.0 이하		

항목	세 미		
	1등	2등	3등
①직경(mm)	4 미만		
②길이(mm)	제한 없음		
③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④피해율 (%)	10 이하	30 이하	
⑤색택	담황색 또는 난백색	담황색 · 난백색 또는 담갈색	
⑥기타	이형삼의 혼입율이 5.0% 미만일 것	이형삼의 혼입율이 10.0% 미만일 것	이형삼의 혼입율이 50.0% 미만일 것
⑦설삼(%)	0.1 이하	0.3 이하	0.5 이하
⑧수분(%)	15.0 이하		

(3) 기타 백삼류(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구분 항목	절삼백삼	절편백삼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①외관 및 성상	1, 2등에 미달되는 것으로 삼의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절단면	해당 없음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활한 것		해당 없음	
③입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μ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μm)의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0mesh(864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μm) 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④절단 두께(mm)	해당 없음	5 이하		해당 없음	
⑤수분 (%)			15.0 이하		

(4) 잡삼류

항목 등급	1등	2등	3등
①성상	인삼 고유의 향취를 가질 것		
②피해 삐(%)	10 이하	30 이하	제한 없음
③색택	담황색 또는 담갈색	담황색 또는 담갈색	
④기타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내용조직이 충실하여야 한다.	
⑤수분(%)	15.0 이하		

(5) 원형백삼

항목 등급	1등(송)	2등(죽)	3등(데)
①성상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1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2등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머리·몸체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균형을 이루며, 그 정도가 등외 최저표준품 이상일 것
②수분(%)	15.0 이하		
③피해 삐 (%)	5 이하	10 이하	제한없음
④색택	담황색 또는 담갈색	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	담황색·담갈색 또는 백황색

*비고 : 높은 온도로 급속건조하여 내용조직의 색택이 변한 때에는 3등으로 하고, 건조작업의 부실로 동체 절단부에 연륜이 아닌 테가 선명하게 있는 것은 2등 이하로 한다.

라) 흑삼

(1) 직삼

항목	등급	1등(천)		2등(지)		3등(양)		
		머리	몸통	균열과 흠집이 없는 것	균열과 흠집이 전체표면적의 4분의 1 이하	길이 3.5cm 이상	제한 없음	
① 체형	다리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3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1개 이상 잘 발달되어 있고 균열이 다리길이의 1/2 이하이며, 길이가 몸통길이의 3/4 이하인 것		다리가 없거나 불균형인 것		
	② 수분(%)	15.0 이하						
③ 조직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며, 머리밑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0.5mm 이하인 것으로 길이가 10mm 이하인 것		내부조직이 치밀·견고하며, 뇌두밑 10mm 이하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시 내공·내백의 직경이 2.0mm 이하의 것으로 몸통길이의 1/4 이하인 것		내백이 몸통길이의 1/3 이하거나, 내공이 몸통길이의 1/2 이하인 것			
④ 색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떤 것으로 균일한 것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떤 것으로 균일하지 못한 것	
⑤ 표피	윤기있는 색택으로 갈피·황피가 전체표면적의 1/4 이하인 것		윤기있는 색택으로 갈피·황피가 전체표면적의 1/3 이하인 것		갈피·황피 또는 옹피 등이 전체표면적의 1/2 이하인 것			
⑥ 그 밖의 사항	직립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부착미삼은 중미 이상이어야 한다.							

(2) 원형흑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곡삼, 반곡삼, 그 밖의 형태의 삼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체형·색택 및 표피에 대한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4) 흑미삼류(대미, 중미, 세미)

항목	등급	대미			중미			세미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① 직경(mm)	6 이상			4 ~ 6			4 미만			
② 길이(mm)	30 이상 60 미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③ 균열상태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약간 있는 것	제한 없음	약간 균열이 있는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④ 내공·내백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없는 것	단면의 1/5 이하인 것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⑤ 수분(%)	15.0 이하									
⑥ 이형삼의 혼입률(%)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5.0 미만	10.0 미만	50.0 미만	
⑦ 피해삼(%)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10 미만	30 미만	제한 없음	

(5) 그 밖의 흑삼류(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구분 항목	절삼흑삼	절편흑삼	중절흑삼	세절흑삼	파쇄흑삼
①외관 및 성상	뇌두, 동체, 다리, 색택, 표피조직이 천지, 양삼에 미달되는 것으로 내백이 동체의 1/2 이하이며 중간부분을 가로로 자른 것	내공·내백의 가장 긴 지름이 3mm 이내이고 백파·균열과 절단불량품이 없으며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고유의 색상과 향취를 가진 것
②절단면	해당 없음	타원형 또는 원형이며 평활한 것		해당 없음	
③임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mesh(111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10mesh(1900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10mesh(1900μm)의 체를 통과한 후 20mesh(864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2mesh(864μm)의 체를 통과한 후 120mesh(117μm)체위에 남는 것이 90% 이상
④절단 두께 (mm)	해당 없음	5mm 이하		해당 없음	
⑤수분(%)			15.0 이하		

* 비고: 검사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최저표준품

최저표준품이란 삼종별로 최저한도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인삼류검사기관이 제작하여 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포장검사

가) 일반기준

- (1) 포장재는 제품의 보관·운반과정에서 흡습 및 충격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2) 포장재는 제품의 품질관리에 결함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3) 단위포장은 이를 해체한 후 임의로 재포장할 수 없도록 봉합되어 있어야 한다.
- (4) 포장용기의 내용물충만도가 70% 이상이어야 한다.
- (5) 홍삼본삼·태극본삼·흑삼본삼 및 백삼본삼의 경우(수입 인삼류중 인삼제품 및 인삼제제 의약품의 원료용을 제외한다) 각각 다음의 지별 또는 편급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홍삼본삼·흑삼본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37.5g	개체당중량(g)
크기별	지별	편급별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특대편	10	14	14	7	-	-	-	36 이상
	15	19	19	10	-	-	-	27~36
대편	20	28	28	14	7	-	-	19~27
	30	38	38	19	10	5	-	14~19
	40	48	48	24	12	6	3	12~14
중편	50	58	58	29	15	8	-	10~12
	60	68	68	34	17	9	-	8~10
	70	78	78	39	20	10	-	7~8
소편	소지 편급외		70~100 101 이상	40~50 51 이상	21~25 26 이상	11~13 14 이상	-	6~7 6 미만

* 참고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지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지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다) 태극본삼, 백삼본삼

구 분		600g	300g	150g	75g	개체당중량(g)
크기별	편급별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뿌리수	
특대편	5	10	5	3		47.1 이상
	8	16	8	4		35.1 ~ 47.0
	10	20	10	5		25.1 ~ 35.0
대 편	15	30	15	8	4	17.6 ~ 25.0
	20	40	20	10	5	13.6 ~ 17.5
	25	50	25	13	6	11.1 ~ 13.5
중 편	30	60	30	15	8	8.8 ~ 11.0
	40	80	40	20	10	6.8 ~ 8.7
	50	100	50	25	13	5.6 ~ 6.7
소 편	60	120	60	30	15	4.6 ~ 5.5
	75	150	75	38	19	3.6 ~ 4.5
	편급외	151이상	76이상	39이상	20이상	3.6 미만

* 참고 : 포장검사는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에 따른 크기별 또는 편급별로 검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정한 포장단위 외의 포장단위에 대하여는 300g 단위포장의 크기별·편급별·뿌리수 및 개체당중량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삼의 지별·편급별 구분 및 별도의 포장단위는 필요한 경우 인삼류 검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4) 표시검사

가) 품목·원료삼의 생산년도, 원산지, 연근(미삼을 제외한다), 등급, 중량, 편급(뿌리수), 크기, 제조자(수검자)의 주소, 상호, 성명, 자리적표시등록번호, 품질보증기간, 검사연월일 및 검사자를 기재하였는지의 여부

나) 인삼류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상호 등을 포장에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다) 겉포장이나 속포장 등의 설명에 인삼의 유효성분·함량·용법 및 용량 등을 허위로 표기하였는지의 여부

라) 내용물의 용량이 포장에 표시된 중량 이상인지의 여부

마)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불합격 기준

홍삼·태극삼·흑삼 및 백삼검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재제조함으로써 상위등급 또는 해당규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원하는 때에는 검사등급판정을 보류하고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제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가) 품질검사, 포장검사 및 표시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나) 변질되었거나 곰팡이가 발생한 것

- 다) 유해물질이 포함되었거나 고유색상을 변색시킬 수 있는 물질 등의 유해물질로 처리한 것
- 라) 인위적 조작을 하여 내용성분이 유실된 것
- 마) 쟁해가 발생한 것

3. 인삼류의 검사방법

홍삼, 태극삼, 흑삼, 백삼은 전수 또는 추출한 표본에 대하여 관능검사방법 또는 검사기기에 의한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개정 2012.1.26>

자체검사업체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1.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일반검사기준(수분은 제외한다)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경고, 다만, 검사정지 농약잔류 6개월 허용기준 을 위반하였을 경우 에는 검사정지 1개월		치정취소
나. 법 제1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하여 개별검사에 미달하는 인삼류를 합격품으로 검사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	다음의 1) 및 2)의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기준, 행정처분기준 적용		
2. 법 제1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업체 또는 검사증지를 불이지 아니하거나 인쇄하지 아니하고 인삼류를 판매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치정취소	
3. 법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직접 제조하지 아니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 다만, 수출용으로서 자기상표를 붙여 자체검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		치정취소	
4.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		치정취소	
5.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		치정취소	

1) 벌점부과 및 지정취소기준

항목별		벌점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1점	2점	3점	
○ 연근 착오율	1개 년근 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2개년근 이상 착오율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 등급 착오율	1개 등급 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2개등급 이상 착오율	5.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 편급착오율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 수분착오율 및 중량비율		1.0% 이상 2.0% 미만 20.0% 이상	2.0% 이상 3.0% 미만 20.0% 이상	3.0% 이상 4.0% 미만 20.0% 이상	4.0% 이상 20.0% 이상
○ 중량착오율		부 족 량 1.0% 이상 2.0% 미만	부 족 량 2.0% 이상 3.0% 미만	부 족 량 3.0% 이상 5.0% 미만	부 족 량 5.0% 이상

2) 행정처분의 기준

1)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아래의 행정처분 지수로의 환산방법에 따라 환산한 지수가 1년간(6개월 자체검사정지기간은 제외한다) 5점 미만인 경우는 시정을 명하고, 5점 이상인 경우는 6개월 자체검사정지를 명하며,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 행정처분 지수로의 환산방법 : 확인시료의 벌점합계÷확인시료수

- ※ 1. 검사 결과 2개 항목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벌점을 적용한다.
- 2. 연근·등급 및 편급착오율은 확인한 단위포장내의 총개수 중 기준에 부적합한 개수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3. 수분착오율은 수분함량을 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수분함량을 말한다.
- 4. 중량비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수분기준을 초과한 개수의 중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5. 중량착오율은 단위포장 중량에 대한 부족증량의 백분율로 산출한다.
- 6. 제1호가목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다.

검사수수료(제22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관능검사	해당 물품가격의 6/1,000 이하	
이화학검사	5,000원 이하/시료 1점	○ 제27조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해당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수수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농약잔류검사를 함께 있어서 여러가지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분의 수에 관계없이 1성분으로 본다.
비생물검사	5,000원 이하/시료 1점	
농약잔류검사	6만원 이하/시료 1점 1성분	

[별표 5] <개정 2012.1.26>

재검사명령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항목별	착오율
1. 연근착오	1개년근 착오 20.0% 이상
	2개년근 이상 착오 10.0% 이상
2. 등급착오	1개등급 착오 20.0% 이상
	2개등급 이상 착오 10.0% 이상
3. 편급착오	30.0% 이상
4. 수분착오	2.0% 이상 착오가 20.0% 이상
5. 중량착오	부족량 2.0% 이상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관련 별지

[별지 제1호서식] 인삼경작신고서	85
[별지 제2호서식] 인삼경작신고필증	86
[별지 제3호서식] 인삼경작변경신고서	87
[별지 제4호서식]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	88
[별지 제5호서식] 인삼경작승계신고서	89
[별지 제6호서식] 수삼연근확인신청서	90
[별지 제7호서식] 수삼연근확인서	91
[별지 제8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92
[별지 제9호서식]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93
[별지 제9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94
[별지 제10호서식] 인삼류제조업(변경·휴업·재개업)신고서	95
[별지 제11호서식] 인삼류제조업 휴업·재개업신고필증	96
[별지 제12호서식]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97
[별지 제12호의2서식]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98
[별지 제13호서식] 인삼류검사(국내용·수출용·수입용)신청서	99
[별지 제13호의2서식] 검사관리대장	100
[별지 제13호의3서식] 검사필증수불대장	103
[별지 제13호의4서식] 원산지검사대장	104
[별지 제13호의5서식] 농약잔류검사대장	105
[별지 제13호의6서식] 미생물검사대장	106
[별지 제14호서식] 인삼(종자·종묘)검사신청서	107
[별지 제15호서식]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서	108
[별지 제15호의2서식] 암류증	109
[별지 제16호서식]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	110
[별지 제17호서식]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111
[별지 제18호서식] [종전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08.1.14>]	
[별지 제19호서식] 인삼류조사직원증	112
[별지 제20호서식] 인삼류조사공무원	113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인삼경작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경작지		⑤지목	⑥지적	⑦인삼식재면적	⑧식재연월일
도·시·군·읍·면·리·동 번지			a	a	
⑨총식재면적	a	⑩수확예정연도		⑪식재구분	<input type="checkbox"/> 직파 <input type="checkbox"/> 식재
⑫수확예정연근	<input type="checkbox"/> 4년근 <input type="checkbox"/> 5년근 <input type="checkbox"/> 6년근 <input type="checkbox"/> 묘삼	⑬경작지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임차	⑭계약경작 회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희망
인삼산업별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구비서류 :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1부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27271-19311민

99.6.12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경작신고필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수확예정연도 : 수확예정연근 : 년근
신고번호 : 총식재면적 : a
신고일자 :

경작신고지의 파종 또는 식재 사항

①경작지	②지목	③파종 또는 식재면적	④식재일
도·시 시·군 읍·면 리·동 번지		a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인]

27271-36511일

99.6.12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인삼경작변경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경작지	도·시·시·군·읍·면·리·동 번지 (신고번호)			
⑤신고번호		⑥변경연월일		
경작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⑦식재면적	a			
⑧식재연도				
⑨경작지의 위치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귀하				
구비서류 : 인삼경작신고필증				수수료 없음

27271-19411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			
승계인 또는 변경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피승계인	④성명	서명(인)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⑦경작신고번호		⑧변경 또는 승계연월일	
변경 또는 승계사항			
⑨사유	⑩경작지 위치	⑪식재면적	⑫수확예정연도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시·군·읍·면·리·동·번지	a	
인삼산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4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경작(변경, 승계)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장 [인]			

27271-36611일

99.6.1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27271-19511입니다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 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9.8.7, 2001.7.14>

27271-36711면

210mm×297mm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수삼연근확인서

경작자 : 신고번호 :

경작지 :

경작면적 : a 수확면적 : a

수확연월일 : 연근 : 년근

수량 : kg(상자)

인삼산업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삼연근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입회자 주소 :

(경작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

(검사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27271-36811일

210mm×297mm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④ 업 체 명(상호)			
	⑤ 제 조 장 소 재 지			
	⑥ 제 조 종 류 (품목기재)	<input type="checkbox"/> 홍삼 <input type="checkbox"/> 태극삼 <input type="checkbox"/> 흑삼 <input type="checkbox"/> 백삼 <input type="checkbox"/> 인삼제품류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등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수수료	
1. 시설내역서 1부(홍삼, 태극삼 또는 흑삼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참조				
2.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				
(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수수료				

27271-20011번

99.6.12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업체명 :

신고번호 :

제조장소재지 :

제조종류 :

「인삼산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1-20111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처리기간
인삼제품류영업신고통보서				
				2일
신고인	①대표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업체명(상호)				
⑤제조장소재지				
⑥제조품목				
<p>인삼산업법 제1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의 신고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p>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관행정기관의 장 귀하				
<p>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서류</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6>

인삼류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제조 업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④업체명		⑤신고번호	
	⑥제조장소제지	(전화)		
	⑦신고사항		⑧신고사유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 변경·휴업·재개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7271-2021151

99.6.12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류제조업 휴업·재개업신고필증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업체명 :

신고번호 :

제조장소재지 :

신고사항 :

신고사유 :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 휴업·재개업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7271-36911일

210mm×297mm

99.6.12 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8.30>

인삼류제조업등승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피승계인	④성명	서명 (인)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⑦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⑧신고번호	
⑨업체명				
⑩제조장소재지				
⑪승계연월일			⑫제조종류	

인삼산업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류제조업등록증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약)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피승계인의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주)참조
2.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시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7271-20311면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제품류제조승계신고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피계승인	④성명	서명(인)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		
⑦승계사유	<input type="checkbox"/> 상속 <input type="checkbox"/> 양수 <input type="checkbox"/> 합병		⑧신고번호	
⑨업체명				
⑩제조장소재지				
⑪승계연월일		⑫제조품목		
인삼산업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제품류의 제조의 승계신고를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소관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서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처리기간
				관능 : 3일 농약·이화학· 미생물 : 10일
신청인 (제조자 또는 수집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제조장 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		
⑤업체명	⑥제조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⑦검사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관능 <input type="checkbox"/> 농약(성분) <input type="checkbox"/> 이화학(항목) <input type="checkbox"/> 미생물(항목)
⑧인삼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홍삼(45.6년) <input type="checkbox"/> 태극삼(45.6년) <input type="checkbox"/> 백삼(45.6년)	⑨수량	⑩제조연월일	
⑪원산지	⑫검사회망연월일		⑬검사회망장소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수삼연근확인서 1부(5년근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주) 참조
2.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사본 1부(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27271-20511번
99.6.12 개정승인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08.1.14>

검사관리대장

삼 종	생산년도		검사월일		제조로트번호		검사량		검사자						
홍 삼															
구분	연근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검사 (%)	검사 필증 번호	구 분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검사 (%)	검사 필증 번호			
직삼	4	1등(천)		~	~	~	마침류	대미	1등	~	~	~			
		2등(지)							2등						
		3등(양)							3등						
		계							계						
	5	1등(천)					증미		1등						
		2등(지)							2등						
		3등(양)							3등						
	6	계							계						
		1등(천)					세미		1등						
		2등(지)							2등						
		3등(양)							3등						
	계								계						
	합계						기타	절삼							
기타 형태	대편	4	합격		~	~	절편			~	~	~			
		5	합격				증절								
		6	합격				세절								
		계					과쇄								
	중편	4	합격				계								
		5	합격												
		6	합격												
		계													
	소편	4	합격												
		5	합격												
		6	합격												
		계													
	합계														

* 당일 검사할 물량 중 제조 로트 번호가 많을 경우에는 구분란에 기재

삼 종	생산년도	검사월일	제조롯트번호	검사량	검사자							
태극삼												
구분	연근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검사 (%)	검사 필증 번호	구 分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검사 (%)	검사 필증 번호
직삼	4		1등(송)				미삼류	대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5		1등(송)				중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6		1등(송)				세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합계				기타	절삼	합격			
원형	4		1등(송)					절편	합격			
			2등(죽)					중절	합격			
			3등(매)					세절	합격			
			계					파쇄	합격			
	5		1등(송)									
			2등(죽)									
			3등(매)									
			계									
	6		1등(송)					계				
			2등(죽)									
			3등(매)									
			계									
			합계									

* 당일 검사할 물량 중 제조 롯트 번호가 많을 경우에는 구분란에 기재

삼 종		생산년도		검사월일		제조롯트번호		검사량		검사자				
백 삼														
구 분		연근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결사 (%)	검사 팔증 번호	구 分		포장 중량 (g)	등급	검사 수량 (개)	수분 결사 (%)	검사 팔증 번호
분삼류	직삼	4		1등(송)				마삼류	대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5			1등(송)				증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6			1등(송)				세미			1등			
				2등(죽)							2등			
				3등(매)							3등			
				계							계			
				합계				기타	절삼		합격			
곡삼	4			1등(송)							절편			
				2등(죽)							증절			
				3등(매)							세절			
				계							파쇄			
	5			1등(송)							계			
				2등(죽)										
				3등(매)										
				계										
	6			1등(송)										
				2등(죽)										
				3등(매)										
				계										
				합계										

* 당일 검사할 물량 중 제조 룻트 번호가 많을 경우에는 구분란에 기재

검사필증수불대장

(주) 1. 연근별로 구분하여 기록 할 것.

2. 과지 등 사용처 못하게 된 검사필증은 대장 이면에 물이거나 면도로 보관, 관리 할 것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08.1.14>

원산지검사대장

번호	수출업자 (신청업체)	수입자	품 명	수 량	선적 항구	검사 기관	검사 일자	발급 기관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08.1.14>

농약잔류검사대장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08.1.14>

미생물검사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14>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제조업체명(상호)						
⑤제조장 소재지	(전화)					
⑥영업소 소재지	(전화)					
인삼 제조업 신고						
⑦신고월일	⑧신고번호	⑨제조인삼종류				
제조관리부서 책임자	⑩주소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주소	⑭성명	⑮주민등록번호			
⑯자체검사업체로 지정 받고자하는 인삼종류 및 품목						
인삼생산, 검사 및 판매내역						
⑰연도	⑱삼종	⑲품목	⑳연근	㉑생산량	㉒검사량	㉓판매량
「인삼산업법」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삼류제조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인삼류 품질관리 시설 및 인력내역 1부 3. 최근 2년 동안 인삼류를 자가제조하여 인삼류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를 받은 실적(법률 제8505호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 항 본문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 자체검사업 체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다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체 검사업체가 자체검사한 실적을 포함한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제 호		압 류 증		
①압류품 제조업소	성 명		상 호	
	소 재 지			
②압류품 판매업소	성 명		상 호	
	소 재 지			
③압 류 품 명				
④압 류 수 량				
⑤압 류 사 유				
⑥압 류 일 시				
⑦품목의 제조 또는 검사연월일				
⑧압 류 장 소				
⑨소 유 자				
「인삼산업법」 제17조의4제2항,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압류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공증식) 인삼류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artificially propagated) Korea ginseng inspection)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공증식)인삼류검사증명서를 교부합니다(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described (artificially propagated) ginseng have been inspected and passed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Date) 년 월 일

(Certified by) 인삼류검사기관의 장 [인]

27271-21011 일

210mm×297mm

99.6.12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자체검사업체검사성적서

150 월간

수신 :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발신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인)

1. 검사실적

삼종	연근	등급별 수량(kg)					
		1등	2등	3등	등외	합격	계

* 합격란은 기타 인삼류의 합격품중 1등·2등·3등 및 등외를 제외한 것

2. 이화학·미생물검사실적

*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명을 반드시 기재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검사
성적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제 호

인삼류조사직원증

사진
(2.5cm×3cm)

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인삼산업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인삼류조사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90mm×6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1. 인삼류 조사직원이 인삼류에 대한 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때에는 항상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호

인 삼 류 조 사 공 무 원

사 진
(2.5cm×3cm)

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인삼산업법」 제15조제4항 · 제17조의4제3항 · 제19조제5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인삼류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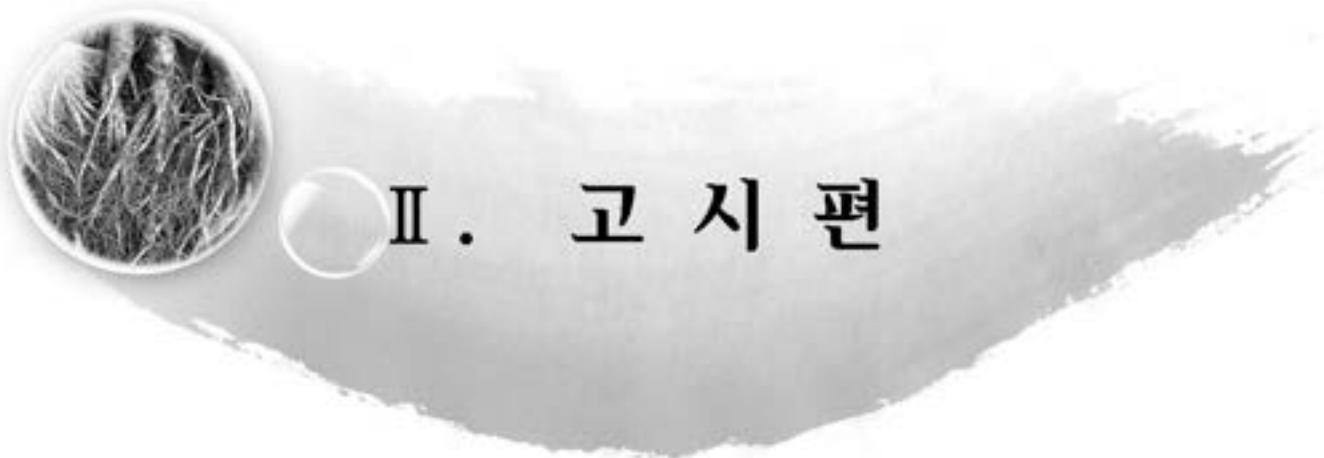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90mm×60mm(인쇄용지)(특급) 120g/m²

1. 인삼류 조사공무원이 인삼류에 대한 조사 · 확인 또는 압류 등을 하는 때에는 항상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내보여야 합니다.
2.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 증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3. 이 증표의 기재사항 중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Ⅱ. 고 시 편

1.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인삼산업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삼산업법」 제8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삼 수경재배의 방법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 수경재배"라 함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규격을 갖춘 시설 내에서 인삼에 필요한 양분을 깨끗한 물에 용해시켜 배양액을 만든 후 이를 질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청정한 환경에서 인삼을 단기간에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수경재배인삼"이라 함은 인삼종자를 빌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내지 16개월 동안 길러서 휴면이 끝난 묘삼을 재배상에 심고 비료염을 깨끗한 물(EC 0.3dS/m이하)에 용해시켜 만든 배양액을 이용하여 약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재배하여 수확한 잎, 줄기 및 뿌리가 불어있는 형태의 인삼을 말한다.

제3조(수경재배 방법의 종류) ①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지경 방법" 이란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하게 고안된 용기에 배양액의 조성에 영향이 적은 펄라이트나, 베미큘라이트, 왕겨, 퍼트모스 등을 적절히 혼합한 배지를 채우고 묘삼을 일정간격으로 심은 후 점적노즐이나 점적관을 통해 배양액을 공급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분무경 방법" 이란 특정하게 고안된 용기(배지가 없는 상태)에 묘삼을 심고 인삼의 생육에 적합한 배양액을 뿌리 부분에 일정시간 간격으로 직접 분무하여 재배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인삼을 수경재배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인삼수경재배방법인정 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농촌진흥청장이 제2항에 따른 인삼수경재배방법 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서류의 검토와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그 재배방법이 적합한지 판정하고, 그 인정 여부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인삼 수경재배용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인삼 수경재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비료의 종류는 별표의 제3호의 편창기준 8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규정에 따른다.

③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1. 묘삼의 사용 기준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1. 유전자변형 묘삼은 수경재배에 사용할 수 없다.</p>
권장 기준	<p>1.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생산에 사용되는 묘삼은 국내재래종(자경종)이나 공인된 보증서가 있는 품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보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생산자단체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및 묘삼 보증서 또는 확인서에는 생산지역, 품종명, 공급처, 생산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불명확한 묘삼이나 이종식을 개체는 전체 생산과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p>2. 인삼 수경재배에 적합한 묘삼은 인삼종자를 받아시켜 청정한 환경에서 약 12개월 내지 16개월 동안 길러 생산한 묘삼으로 0.8~1.0g/개 이상의 뇌두가 충실한 것을 사용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에 상처나 적변·병흔이 없을 것 ○ 저장이나 휴면기간중 동해나 냉해를 받지 않은 것 ○ 진류농약 검사 후 수삼 안전기준에 합격한 것 등

2. 인삼 수경재배 시설관리 기준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2. 온실의 구조 : 풍속, 강우, 적설에 대비한 내재해성 구조, 환기, 내부 차광시설, 보온 커튼 시설, 냉난방 시설 등 안전하게 인삼 수경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3. 배양액 재사용 시설 : 배액(폐액)은 재사용(Recycle)을 원칙으로 하되, 강우 시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p>

권장 기준	3. 재배온실 : 광·온·습도 등 복합환경제어장치, 외부 차광·보온커튼, 기화냉각 장치, 난방·가습장치, 방충망, 입체식 재배상의 경우 인공광(LED, 백열등, 형광등 중 선택) 등 수경재배 인삼이 배양액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하부와 지상부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배양액 공급장치 : 배양액 자동제어시스템, 정확한 배양액 농도와 산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EC센서, pH센서에 의한 자동 회석기능 부착, 적정한 관수량을 줄 수 있도록 수분센서나 일사센서에 의하여 관수량 조정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저온저장고 : 묘삼의 안전저장과 흙면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포터블측정기 구비 : 온·습도 측정 기록장치, 포터블 EC ^{※1)} , pH메타, 일사계 등

^{※1)} EC : 전기전도도(Electric conductivity)라고 하며 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

3. 비료 및 배양액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4. 수경재배용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95%이상 순도가 높은 비료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사용 내역이라 함은 비료·품목명, 주성분, 사용장소, 시기, 처방기준, 사용농도 등을 말함.
	5. 비료는 농산물, 포장재, 종자·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강우 시 유출방지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7. 적정 배양액 농도를 준수하고 비료의 과다시용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양액 처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 인삼 수경재배 적정 배양액 농도 : EC 0.6~1.0dS/m 범위

8. 인삼 수경재배에 사용하는 화학비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비 료 명
A 액	다량원소	질산칼슘 4수염 $\text{Ca}(\text{NO}_3)_2 \cdot 4\text{H}_2\text{O}$
		질산칼슘 10수염 $5[\text{Ca}(\text{NO}_3)_2 \cdot 2\text{H}_2\text{O}]\text{NH}_4\text{NO}_3$
		질산가리 KNO_3
		질산암모늄 NH_4NO_3
	미량원소	킬레이트철 Fe-EDTA(13%)
권장 기준	B 액	질산가리 KNO_3
		제1인산칼륨 KH_2PO_4
		황산고토 $\text{MgSO}_4 \cdot 7\text{H}_2\text{O}$
		제1인산암모늄 $\text{NH}_4\text{H}_2\text{PO}_4$
		황산칼륨 K_2SO_4
	미량원소	붕 산 H_3BO_3
		황산망간 $\text{MnSO}_4 \cdot \text{H}_2\text{O}$
		황산아연 $\text{ZnSO}_4 \cdot 7\text{H}_2\text{O}$
		황산구리 $\text{CuSO}_4 \cdot 5\text{H}_2\text{O}$
		몰리브덴산나트륨 $\text{Na}_2\text{MoO}_4 \cdot 2\text{H}_2\text{O}$

* 두개의 원액탱크로 구분하여 A액과 B액을 조제 후 사용한다.

9. 천연물을 원료로 제조한 활성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살포 전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분석하거나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분석치는 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물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6. 수경재배 전 반드시 수질을 분석하여 원수가 수경재배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수는 환경영재기본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깨끗한 물(pH 5.0~7.5, EC 0.2dS/m이하, 중탄산 HCO₃ 30~50ppm 범위, P 1.0, K<5.0, Ca<30.0, Mg<10.0, Fe<0.03, N<0.3ppm)이하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용수의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있거나 오염물질 유입에 의한 오염이 우려될 경우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 단, 작물의 필수양분인 질소, 인 성분은 기준적용의 예외로 한다.</p>
권장 기준	<p>7. 농업용수의 수질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p> <p>10. 농업용수의 분석자료 및 관수방법 등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 기록·관리 사항 : 수질 분석기관, 분석일자, 분석결과, 관수량 등</p>

5. 배지사용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8. “수경재배용 배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증금속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잡초종자가 섞이지 않고 소득이 잘 된 깨끗한 배지를 사용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지기준 : 가볍고 중성이며 통기성과 보수력이 좋고 부식과 분해가 느린 것을 선택하여 염분이나 탄닌 등 생육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성분이 없어야 한다.
권장 기준	11. 피트모스, 펠라이트, 알카리 성분을 제거 한 훈탄, 염분과 탄닌이 제거된 코이어 등 배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

6. 병해충관리 및 기구의 소독

구분	세부기준
<병해충 방제>	
필수 기준	<p>9. 병해충 방제를 위한 관리내용은 해당 농산물 수확 후 1년 이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관리사항 : 관리자, 관리방법, 작업일자, 병해증명 등
<기구의 소독관리>	
필수 기준	<p>10. 시설내 장비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철저히 세척·소독 후 청결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구의 소독은 NaDCC 500~1,000배액으로 세척 소독 후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

7. 잔류농약 등 유해요소 분석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11. 수경재배인삼은 재배 과정에서 화학농약의 사용 등 안전농산물 생산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p> <p>12. 병해충의 방제는 병해충종합관리(IPM)방법으로 재배전 기구나 종자, 종묘의 소독 (열탕소독, NaDCC^{※2} 처리), 저항성 품종 선택, 생물학적 방제, 복합환경조절에 의한 발병억제, 방충망, 부직포 설치, 색상판 사용 등 물리적 방제수단을 적용한다.</p> <p>13. 잔류농약 등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지원 및 출장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와 공급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잔류농약 등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 독성과 잔류, 약물내성이 거의 없는 살균소독제로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첨가 살균소독제로 승인된 물질, 염소화합물 소독제중 가장 진보된 살균·소독제이다. 농업분야에서 토양, 종자소독제로 효과 우수.

8. 수확 작업 및 수확 후 관리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14. 수경재배인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보균자는 수경재배인삼을 통해 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후 처리작업을 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있거나 고사·손상된 수경재배인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하여야 한다.
권장 기준	<p>15. 수확한 수경재배인삼은 이물질 혼입 및 야생동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외 방치를 할 수 없다.</p> <p>16. 수확 후에 선도유지를 위해 예냉, 선별, 포장, 냉장유통 등 농산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제시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수확 후 관리설비, 저장(예냉)시설, 수송 및 운반설비 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약품, 제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권장 기준	<p>12. 수확 및 수확후 관리의 작업장은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장 인근에는 청결한 화장실이나 세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작업 전·후 및 용변 후 손을 청결하게 씻어야 하며, 수건은 개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수확후 관리 모든 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

9. 환경오염 방지의 의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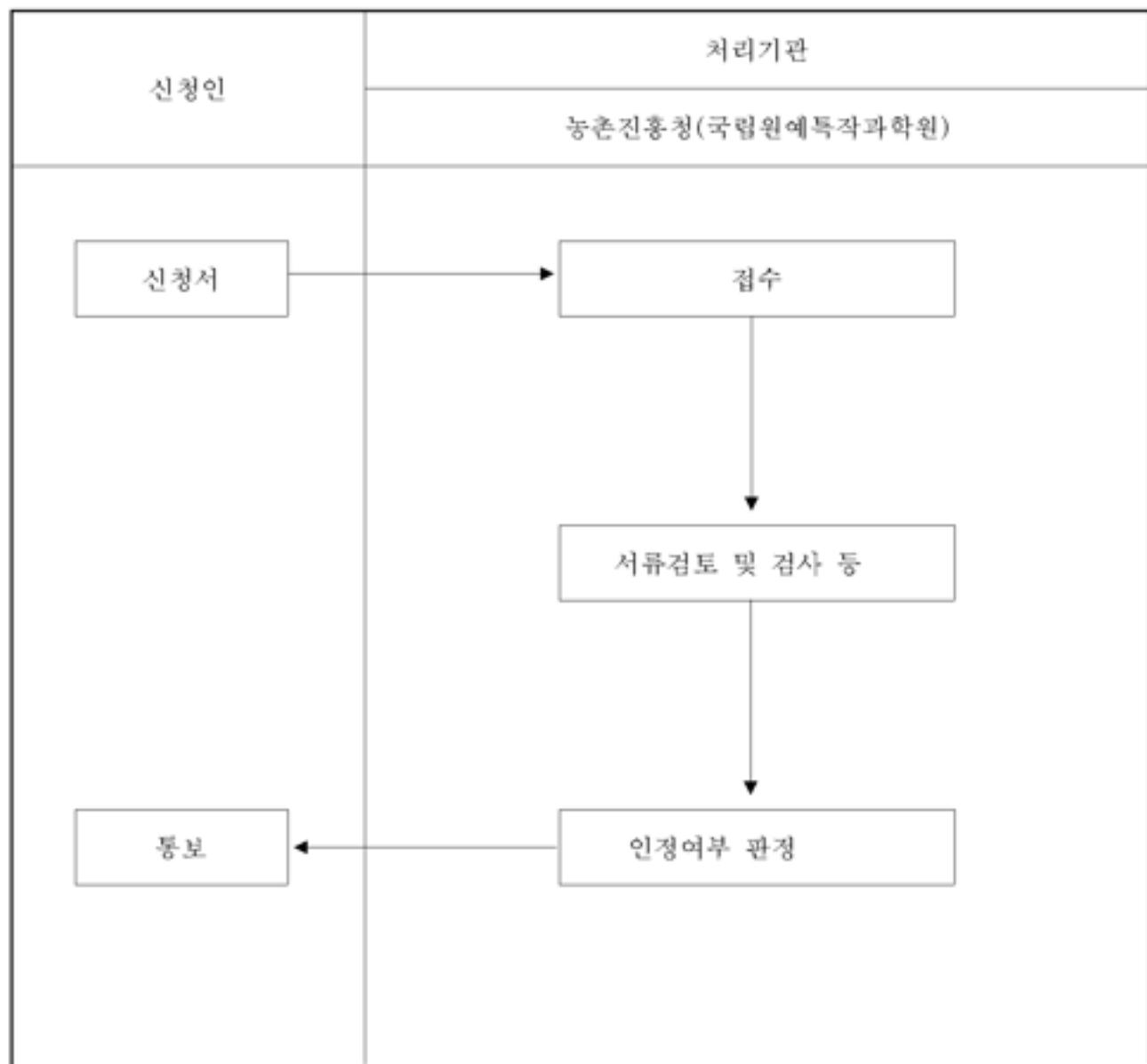
구분	세부기준
필수 기준	<p>17. 수자원 및 수생태 보호지역 등 환경보전지역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9조1항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의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부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제17조2항에서 규정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입 방지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p>

인삼 수경재배 방법 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범인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주소			
⑤ 전화번호		⑥ 이메일 주소		
신청사항				
⑦ 작물명	인삼	⑧ 재배면적	m ²	
⑨ 재배장소				
⑩ 수경재배방식	<input type="checkbox"/> 담액경 <input type="checkbox"/> 물홀림방식(NFT)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⑪ 재배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개월)			
⑫ 생산목적	<input type="checkbox"/> 샐러드용 <input type="checkbox"/> 쌈채소용 <input type="checkbox"/> 녹즙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⑬ 예상생산량 (연간)	kg			
<p>『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삼 수경재배 방법의 인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p>신청인 : (서명 또는 암)</p> <p>농촌진흥청장 귀하(참조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p>				
※ 구비서류 1. 인삼 경작확인서 2. 경종 개요를 기재한 서류				수수료 30,000원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신청인이 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쓹습니다.
3. 구비서류 중 인삼 경작확인서는 관할 인삼관련 품목조합에서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인삼 수경재배 경종 개요는 시설장치나 규격을 포함한 재배과정에 대한 내용을 개조식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표, 그림, 사진 등을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등법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의3,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17조의5,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3,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업체 검사기록서 관리, 검사의 기준·방법, 검사결과의 표시,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자체검사업체 자가 제조여부 확인방법, 검사합격품의 확인검사, 검사원 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인삼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검사 사후관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방법) 규칙 제18조의3 [별표3의2]에서 규정한 인삼류 세부검사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4조(지정서 교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5조(검사결과표시) ①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②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형태로 붙여야 하며, 검사일부인은 검사필증이 부착된 그 위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인삼류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날인위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가제조여부 확인방법 등) ① 농관원장은 인삼류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10월에서 익년 1월 사이에 1회이상 자체검사업체를 방문하여 자가제조여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의 확인방법은 5, 6년근은 수삼연근확인서를, 4년근 이하는 인삼관련 품목조합이 발행하는 인삼경작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와 수삼구입대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되, 원료수삼 구입량과 중간제품 보관량, 완제품의 판매량 등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규칙 제18조제2항의 검사관리대장, 검사필증 수불대장, 원산지검사대장, 농약잔류검사대장 및 미생물검사대장의 기록 및 품질보증기관 동안 보존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인삼류 검사원이 농관원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①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관원장은 인삼류 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업체에서 검사하여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 중인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적정여부를公正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원에 감정반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③ 감정반의 구성은 관리요원 1명과 감정요원 5명이상(홀수)으로 하고 농관원장 및 지원장은 인삼검사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정반원을 지명한다.

④ 농관원장 또는 지원장은 확인검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검사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확인검사에 입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원 교육) ① 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관원장은 인삼류 검사원 등에게 인삼류 검사기법,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연간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삼류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업체의 교육대상자로부터 실무·실기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지리적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규정에 따른 인삼류 지리적표시의 세부표시는 『별표3』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고시 등의 폐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31호(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는 폐지한다.
-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인삼류의 세부검사방법

1. 홍삼·흑삼검사

가. 관능검사

(1) 품질검사·연근검사

(가)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표본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검사여건에 따라 전수검사로 할 수 있다.

(나) 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지별, 포장단위별로 구분하여 10개상자를 1개 소집단으로 편성하고 이중 10%에 해당하는 1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검사시료로 한다.

(다) 항목별 검사방법

- 1) 연근검사는 줄기의 잔기부, 몸통 및 다리의 발달정도에 따라 검사한다.
- 2) 품질검사는 머리, 몸통, 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하고, 내공·내백에 대한 조직검사는 엑스레이 투시기, 백열기 등으로 정밀히 관찰하여 검사한다.
- 3) 홍미삼·흑미삼의 균열상태와 기타홍삼류·기타흑삼류의 절단면, 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 입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00g을 달아 표준체로 20초에 30회 정도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라) 검사의 절차

- 1) 홍삼·흑삼의 검사절차는 「표 1」과 같다. 다만, 수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습점·압착·재건조·시료채취 과정을 생략하고 검사를 할 수 있다.
- 2) 기타형태의 홍삼·기타형태의 흑삼은 1)의 홍삼·흑삼의 검사절차를 준용하되 「표 1」의 습점·압착·재건조·시료채취 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분검사

- (가) 수분검사는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이상 실시하되, 1회에 3상자를 표본으로하여 각 상자 외 상, 중, 하에서 임의로 시료를 채취, 수분을 측정한다.
- (나) 시료중에서 수분이 많다고 판단되는 부위를 채취하여 105℃ 조건에서 황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계측하는 수분정량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기저항식 수분측정기, 적외선조사식 수분측정기, 전열건조식 수분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105℃ 건조법에 의한 수분 계산방법』

$$\text{수분 } (\%) = \frac{\text{시료의 무게(g)} - \text{시료의 건조후 무게(g)}}{\text{시료의 무게 (g)}} \times 100$$

(다) 수분계측방법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농관원고시 제2011-6호 : '2011. 2. 11)에 따른다.

(3) 중량검사

중량검사는 포장재 중량을 제외한 홍삼·흑삼의 실중량만을 첫 달림 0.1g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 한다.

나. 기기검사

(1) 검체 채취방법

(가)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은 원료수삼의 경작자 및 경작필지, 구입시기, 구입장소, 제조시기 등을 감안하여 품질이 동등한 수준의 제품을 대상으로 구분 편성하되, 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검사업체가 익월 검사계획이 있는 경우 그 물량을 모집단으로 편성 한다.

(나) 검사신청

검사신청업체는 관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신청 모집단에 대한 삼종, 연근, 신청물량, 수삼 산지, 제조월일 등을 기록한 후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안전성검사 위탁기관에 검사 신청시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농관원 해당 사무소에 검사용 시료 채취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모집단별 시료채취

이화학(농약, 중금속 등)검사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관능검사(연근검사·품질검사) 전에 검사대상 모집단별로 1점 이상을 채취하되, 인삼류검사기관 또는 농관원 해당 사무소는 시료채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료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점당 시료채취량 : 800g(분석용 400g, 보관용 400g)

(마) 시료발췌 및 채취방법

- 1) 검사대상 6곳 이상에서 발췌 혼합하여 검체로 한다. 다만, 1개 중량이 수거량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검체단위로 한다.
- 2) 마대, 상자 등에 포장된 때에는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방법에 의해 채취한다.
- 3) 벌크상태로 적재된 때에는 표면부분과 중간부분에서 검체단위별로 채취한다.

(2) 항목별 검사방법

(가) 중금속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유해중금속시험법,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나) 회분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일반성분시험법을 준용한다.

(다) 농약잔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인삼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준용한다.

(라) 이 물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이물시험법을 준용한다.

(마) 보존료(방부제)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보존료시험법을 준용한다.

(바) 인공색소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착색료시험법을 준용한다.

(사) 세균수·대장균군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을 준용한다.

(아) 인삼성분

1) 수포화 n-부탄을 추출물 정량법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인삼제품류 시험방법을 준용한다.

2) 둑은 에타올 추출물 정량법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의 생약시험법을 준용한다.

(자) 벤조피렌(혹삼에 함함)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벤조피렌 시험법을 준용한다.

(차) 진세노사이드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의 홍삼 및 인삼시험법을 준용한다.

2. 태극삼·백삼검사

가. 관능검사

(1) 품질검사·연근검사

(가) 검사방법

소포장단위의 태극삼·백삼은 배포장마다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소포장단위 이외의 대포장인 경우에는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집단 편성 및 표본추출

표본검사는 포장단위중량의 10%에 해당하는 시료를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시료채취는 포장의 상, 중, 하의 좌, 중, 우 부위에서 고르게 채취한다.

(다) 항목별 검사방법

1) 연근검사는 줄기의 잔기부, 몸통 및 다리의 발달정도에 따라 검사한다.

- 2) 품질검사는 머리, 몸통, 다리의 체형·색택·향취·내용조직의 충실도·건조정도 등을 밝은 곳에서 오관으로 검사한다.
- 3) 기타 태극삼·백삼류의 절단면, 절단두께 등은 밝은 곳에서 관찰하여 검사하되, 입도측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일 검사량 중에서 3회이상 실시하되 시료는 1회에 3상자에서 임의로 채취하여 측정한다.
 - 입도측정은 채취한 시료를 4분법에 의하여 축분한 후 100g을 달아 표준체로 20초에 30회 정도 쳐서 체상에 남은 시료의 무게를 달아 100g에 대한 비율을 산출한다.

(라) 검사의 절차

태극삼·백삼의 검사절차는 「표 2」와 같다.

(2) 수분검사, 중량검사

수분검사 및 중량검사는 홍삼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나. 기기검사

(1) 검체 채취방법

검체 채취방법은 홍삼의 검체 채취방법을 준용한다.

(2) 항목별 검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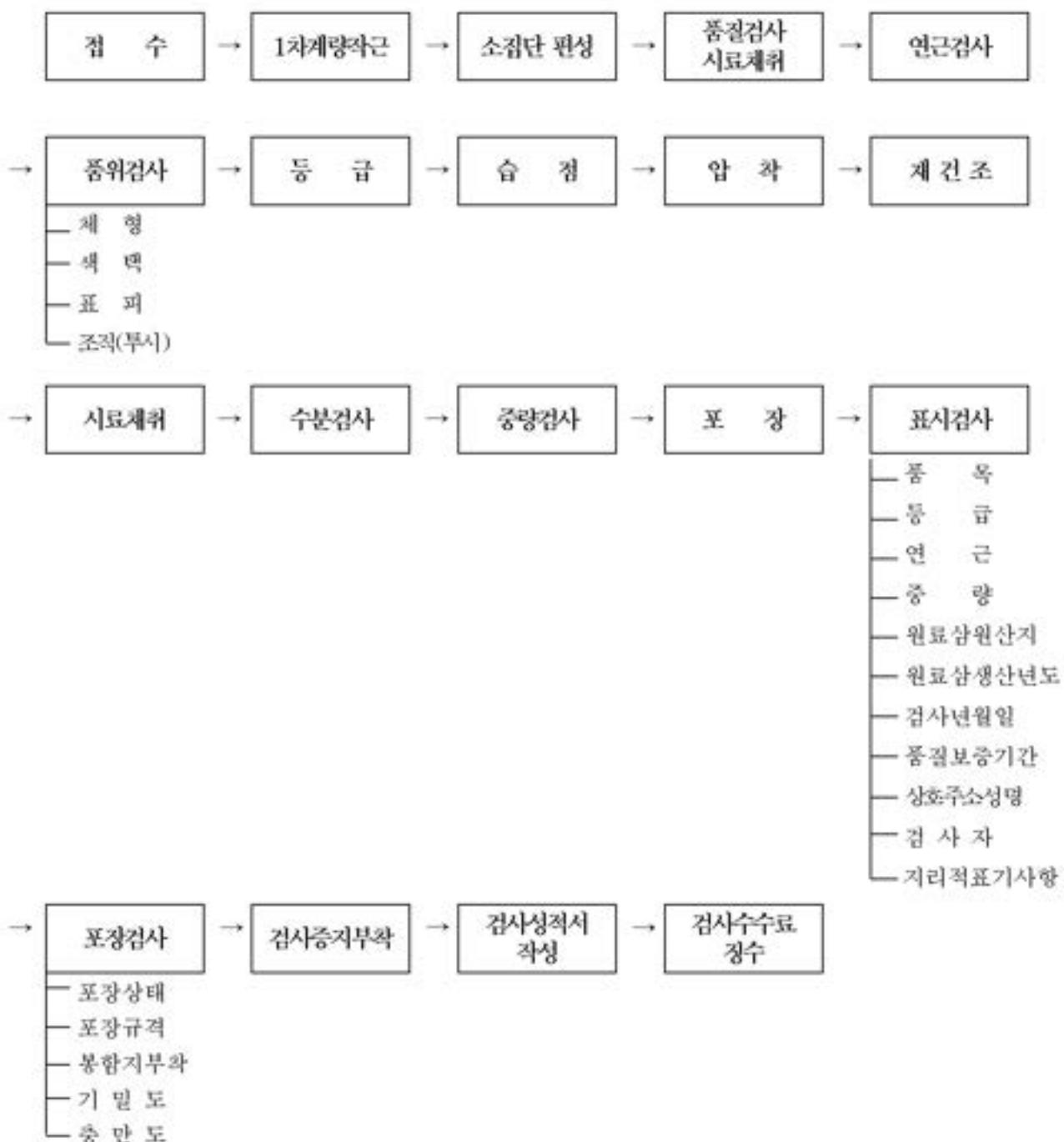
(가) 중금속, 회분, 농약잔류, 이물, 보존료, 미생물 및 인삼성분, 진세노사이드의 검사방법은 홍삼검사방법을 준용한다.

(나) 표백제(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

검사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진의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시험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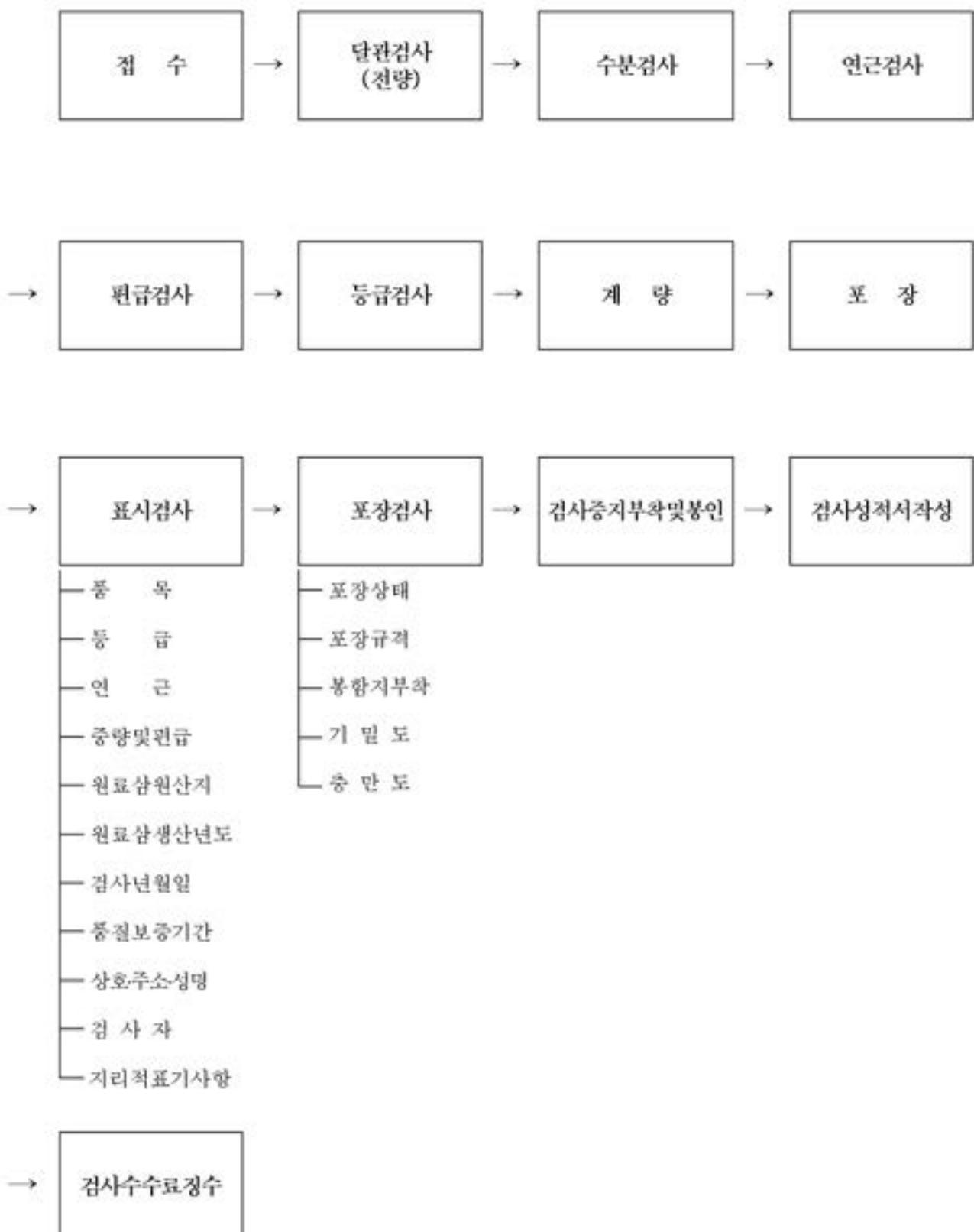
[頁 1]

홍삼·흑삼 검사과정



[표 2]

태극삼·백삼 검사과정



검사필증 및 검사일부인의 규격

1. 검사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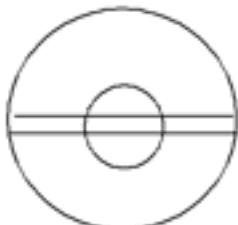


가. 필수 표시기준

- (1) 검사필증 크기는 가로, 세로를 같도록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 (2) 문자 및 숫자의 활자체 중 검사필증, 검사번호, 연근은 윤고딕, 자체검사업체명은 월드컴체로 한다.
- (3) 색상 및 배색비율
 - (가) 바탕 : C100, M70, K20
 - (나) 한국전통격자문양 : C100, M50, K10
 - (다) 자체검사업체 한글 및 영문명, 검사필증, 경계선 : 백색
 - (라) 검사일련번호 : M100, Y100
 - (마) 연근 : C90, M30
 - (바) 인삼, 토두리 : C10, M20, Y50, K10
- (4) 내부문양은 한국전통격자문양으로 처리한다.
- (5) 중앙에 있는 숫자는 연근을 나타내며, 당해 검사품의 연근을 표시한다.
- (6) 검사번호는 업체별 검사제품 수량 일련번호이며, 자릿수는 7자리로 한다.(예시 : 0000001)
- (7) 검사필증 문자는 상, 하 중간에 위치하도록 배열하고, 위에는 자체검사업체명을, 아래는 검사일련번호를 검사필증보다 작게 표시한다.
- (8)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처리한다.

나. 선택 표시기준 : 자체검사업체명 영문 표시는 하단에 표시하되 원할 경우에만 한다.

2. 검사일부인

도 안		
규 격	외원직경	20mm
	내원직경	10mm
표시내용	상 단	자체검사기관명
	중 앙	검사년월일
	하 단	검사원 ○ ○ ○

『별표 3』

인삼류 지리적표시의 세부표시방법

1. 품목별 표시방법

가. 수 삼

- 한글 : 고려수삼
- 한자 : 高麗水蔘
- 영문 : Korean Fresh Ginseng

나. 홍 삼

- 한글 : 고려홍삼, 고려삼
- 한자 : 高麗紅蔘, 高麗蔘
- 영문 : Korean Red Ginseng

다. 태극삼

- 한글 : 고려태극삼
- 한자 : 高麗太極蔘
- 영문 : Korean Taekuk Ginseng

라. 백 삼

- 한글 : 고려백삼, 고려인삼
- 한자 : 高麗白蔘, 高麗人蔘
- 영문 : Korean White Ginseng

마. 인삼제품

- 한글 : 고려인삼제품
- 영문 : Korean Ginseng Products
- 식품공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제품유형을 팔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바. 홍삼제품

- 한글 : 고려홍삼제품
- 영문 : Korean Red Ginseng Products
- 식품공전과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제품유형을 팔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등록기관의 등록번호 표시방법

-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등록 제〇〇호
< “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19호 >

제 호

인삼류자체검사업체지정서

업체명 :

소재지 :

대 표 :

사업자등록번호 :

지정 삼종 :

인삼산업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 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합니다.

201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3. 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등 압류 처분요령

인삼산업법 제17조, 제17조의4, 제1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검사기준 부적합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처분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4월 2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 처분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7조의4, 및 제19조와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24조에 규정된 인삼류 검사기준 미달 품·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품·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압류 및 압류물품 처분절차와 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압류전 조치) ①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은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규칙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자(이하 “검사의무자”라 한다)에게 수거·폐기 또는 재검사를, 법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제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제품을 판매, 보관, 전열한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무자 및 판매자에 대한 수거·폐기, 재검사 및 검사명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수거·폐기, 재검사를 명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검사기준미달제품과 검사일이 같은 제품의 검사 및 보관수량, 판매처 등 보관·판매내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거·폐기 명령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로 한다. 다만, 삼종이나 연근이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의무자는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검사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신청시 인삼류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의 입회하에 시료를 제취하여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으며, 농관원장은 그 결과가 농약잔류허용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재검사 신청을 받은 삼종이나 연근의 수거·폐기명령을 취소 할 수 있다.

⑤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로 하되, 재검사 또는 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인삼산업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검사에외 대상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검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⑥ 농관원장은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무자나 판매자가 이행기간 내에 이행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

⑦ 농관원장은 제6항에 규정된 이행여부 확인을 검사의무자와 판매자의 제조장, 창고, 판매장, 사무실 등에서 보관·진열된 인삼물량, 검사예외 대상자에게 판매한 증빙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조사하여 확인하되, 주요 판매처는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압류 및 압류반 편성) ① 농관원장은 제2조제7항에 의한 수거·폐기, 재검사 또는 검사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검사의무자나, 판매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제17조제9항 및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규칙 제2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품과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품을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거·폐기는 5일, 재검사나 검사는 10일을 연장해줄 수 있으며, 연장기일이 완료된 후에는 재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압류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시에는 조사공무원 2인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압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압류 방법) ① 조사공무원은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제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을 압류할 때에는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며, 소유자 등에게 당해제품이 압류대상임을 확인시킨 후 압류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압류한 제품(이하 “압류품”이라 한다)을 현장에서 봉인하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봉함지를 P.P대의 경우에는 아가리에, 상자일 경우에는 위·아래 날개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은 압류를 한 후 규칙 제24조제1항에 의한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압류증을 작성하여 원본은 압류품의 소유자에게 발행하고, 부분은 조사공무원이 지참하여야 한다.

제5조(압류품의 보관·관리) ① 농관원장은 압류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압류제품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각대행기관에 압류품 인도시까지 변질과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압류품의 보관장소는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의 창고 또는 농관원, 기타 안전한 장소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의 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창고문 등에 봉인을 하여 관리자나 조사공무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압류품의 처분방법) ① 농관원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압류품은 인삼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도록 한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기물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폐기물 인계인수서 또는 폐기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근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요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압류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매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압류물품을 처분하고 검사의무자나 판매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통보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타 농관원장이 정하는 매각대행기관

④ 제3항에 의한 매각대금은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한 후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 등의 폐지) 농관원고시 제2004-6호(검사기준 부적합 인삼류 및 미검사품 등에 대한 압류처분요령)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 수거·폐기 명령서
 재검사

업체명 (상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유				
검사연월일				
확인 삼종				
확인 내근				
대상 수량				
기간	10일 이내(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인삼산업법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수거·폐기, 재검사를,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명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이 암류되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 (인)

인삼류 압류제품

소유주 성명 :

년 월 일 압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 (인)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mmX70mm(한지)

[별지 제3호서식]

애플제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인삼류 폐기제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폐기결과 통보서

폐기물품 소유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폐기결과	폐기 일자			
	폐기 삼종			
	수량(kg)			
	폐기 방법			
	폐기 사유			

인삼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농약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폐기처분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압류제품 매각결과 통보서

낙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압류물품 소유 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매각결과	매각대행기관			
	매각 일자			
	매각 삼종			
	수량(kg)			
	금액(원)			
	수수료 등 제비용(원)			
	반환액(원)			

인삼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물품 매각 결정 내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00출장소장 (인)

4.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한다.

2009년 12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삼종자·종묘검사 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삼종자·종묘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삼종자·종묘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장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시험연구소로 한다. 다만 종묘검사의 일부는 신속한 검사를 위하여 수검자의 포장에서도 할 수 있다.

제4조(검사원)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종자류 검사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5조(검사신청) 인삼종자·종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농관원 시험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시료 채취) 시료채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검사시료 채취방법은 검사원이 직접 검사대상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시료견본을 검사시료로 할 수 있다.
2. 검사대상 종자·종묘의 포장단위는 품위가 균일하도록 5kg, 10kg, 20kg 단위로 포장하여야 하며, 검사시료 채취시에는 수검자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3. 검사시료는 가능한 매 소집단별 상·중·하 각 부위에서 고루 채취하되 검사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은 보관용을 포함하여 종자의 경우 1kg, 종묘는 1,500주를 채취한다.(단, 시료 채취량은 검사신청수량을 감안하여 시료채취자가 가감 할 수 있다)
4. 시료채취가 끝난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봉인하고,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수검자가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한다.

- ① 검사원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 ② 인삼종자·종묘검사 기준 및 방법은 별표1과 같다.
- ③ 검사가 끝난 검사품은 별표2와 같이 봉인 조치한다.
- ④ 검사를 마친 검사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는 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증명서 발급) 검사에 합격한 물량에 대하여 수검자가 검사증명서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시험연구소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거 검사증명서를 발급한다.

제9조(검사수수료) 종자·종묘검사수수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수한다.

제10조(시료의 보관) ① 인삼종자·종묘검사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 보관관리 한다.

- ② 보관용 시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자 : 검사일부터 50일간 건조한 암실에 보관한다.
 2. 종묘 : 검사일부터 50일간 냉동 보관한다.

제11조(검사시료의 처분) 검사시료의 보관기간이 경과된 보관용 시료는 자동폐기 한다. 다만, 수검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관량을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검자가 부담한다.

제12조(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종료일로부터 기산하되,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종자 : 30일
2. 종묘 : 10일

제13조(검사의 실효) 검사를 받은 시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2. 검사의 표시가 소멸 또는 변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
3. 봉인이 파손되었을 때.
4. 검사를 필한 포장을 검사원 입회 없이 해체되었을 때.

제14조(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에 합격한 종자·종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
2. 피검사원이 합격품에 대하여 부정한 수단을 가하여 검사 합격 후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변경된 때.

3. 검사원이 검사기준에 현저히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제15조(의신청 검사) ①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검자가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장은 검사품을 원형대로 보관토록하고,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검사일자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검사원의 지정은 당초 검사원보다 상급자로 한다.

2. 검사시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이의신청 검사결과를 최종검사성적으로 한다.

4. 종묘의 경우는 품위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만 재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의한 재검사결과는 재검사완료 후 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 신청자는 이의신청 재검사결과가 당초보다 불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대장관리) 인삼종자·종묘검사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삼종자·종묘 검사관리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결과보고) 시험연구소장은 연중 검사실적을 익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2일까지로 한다.

『별표 1』

검사의 기준 및 방법

1. 검사기준

가. 종자

항목	구분	규격	기준(%)
	정 립	해당없음	95.0 이상
크기	대립종자	지름 5mm이상	95.0 이상
	중립종자	지름 4mm이상 ~ 5mm미만	95.0 이상
	소립종자	지름 4mm미만	95.0 이상
	개갑종자	해당없음	95.0 이상
	활력종자	해당없음	95.0 이상
	잡초종자	해당없음	0.1 이하
병든종자	특정병	해당없음	1.0 이하
	기타병	해당없음	3.0 이하

나. 종묘

항목	구분	규격	기준(%)
	정 묘	해당없음	95.0 이상
크기	길 이	14cm이상	95.0 이상
	중 량	680g이상/1000본	95.0 이상
병든묘삼	특정병	해당없음	0.01 이하
	기타병	해당없음	1.0 이하
특정해충 피해묘삼		해당없음	0.01 이하

다. 종자·종묘검사 용어의 정의

(가) "백분율(%)"이라 함은 전체 중량 또는 개체수에 대한 검사항목별 해당 중량 또는 개체수의 비율을 말한다.

- (나) “정립”이라 함은 이종립·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건실한 종자를 말한다.
- (다) “대립종자”라 함은 체눈 지름이 5밀리미터인 체에 통과하지 아니한 종자를 말한다.
- (라) “중립종자”라 함은 체눈 지름이 4밀리미터인 체에는 통과되지 아니하고 5밀리미터 인 체에는 통과되는 종자를 말한다.
- (마) “소립종자”라 함은 체눈 지름이 4밀리미터인 체에 통과하는 종자를 말한다.
- (바) “개갑종자”라 함은 종자를 처리하여 껍질이 연화되고 껍질안의 씨눈이 벌어진 상태의 것을 말하며 종자껍질이 벌어지지 아니한 종자를 미개갑종자라 한다.
- (사) “활력종자”라 함은 온도·습도 등이 적정한 자연조건하에서 발아가 가능한 종자를 말하며, 테트라졸리움 염색방법 등으로 결정한다.
- (아) “종묘”라 함은 묘포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인삼묘를 말하며, 묘포에서 1년간 생육하고 월동한 후의 이름해 짹이 나오기 전까지의 인삼묘를 1년생 묘삼이라 한다.
- (자) “정묘”라 함은 뇌두손상묘삼, 뇌두포(包)가 퍼진 묘삼, 적색표피묘삼, 표피반점묘삼, 표피손상묘삼, 견조된 묘삼, 달팽이묘삼 등이 아닌 정상묘삼을 말한다.
- (차) “종자의 특정병”이라 함은 점무늬병(*Alternaria panax*)·탄저병(*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
- (카) “종자의 기타병”이라 함은 복합병으로 발생한 부폐병 등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
- (타) “묘삼의 특정병”이라 함은 뿌리썩음병(*Cylindrocarpon destructans*)·균핵병(*Sclerotinia sclerotiorum*)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
- (파) “묘삼의 기타병”이라 함은 점무늬병(*Alternaria panax*)·재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 및 모질록병(*Fusarium solani*)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
- (하) “특정해충”이라 함은 감자썩이선충(*Ditylanchus destructor*) 및 뿌리혹선충(*Meloidogyne hapla*)을 말한다.

라. 종자·종묘검사의 불합격 기준

- 종자·종묘검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것.

2. 검사방법

가. 종자

(1) 중량검사

매대검사를 실시하되, 포장제중량을 감하여 실중량으로 한다.

(2) 품위검사

(가) 검사시료는 150g 이상 이어야한다

(나) 정립율, 종자크기, 개갑율, 잡초종자율 등을 확대경, 현미경, 체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다) 분석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3) 활성검사

- (가)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립 이상 이어야한다
- (나) 종자의 활력을 검정하기 위해 테트라졸리움염(2,3,5-Triphenyl-Tetrazolium-Chloride)을 pH 6.5~7.5의 중류수와 인산 완충용액에 녹인 0.1~1.0%의 수용액을 사용한다.
- (다) 검사할 종자를 자르기 쉽고 염색이 용이하도록 물에 침지한 후 배를 분리하고 직사 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염색액에 침지시킨 후 염색여부를 검정하여 종자의 활성을 평가한다.

(4) 병원균검사

- (가) 검사시료는 정립종자 400립 이상 이어야한다
- (나) 어지흡습법에 의한 육안 및 현미경 검경에 의하여 검사한다.
- (다) 사례에 여지 2매를 얹고, 4ml 살균수를 부어 수분을 유지시킨 후 종자를 한 사례당 종자 20립씩 치상하여 20~25℃에서 10일간(광조건 12시간 암조건 12시간) 배양기에서 배양후 검사한다.
다만, 현미경 검경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이병부위에서 균분리 및 배양하여 검사한다.

나. 종묘

(1) 중량검사

매대검사를 실시하되, 포장재중량을 감하여 실중량으로 한다.

(2) 품위검사

- (가) 검사시료는 400주 이상 이어야한다
- (나) 정묘율, 종묘크기, 잡초종자를 등은 확대경, 현미경, 체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 (다) 분석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3) 병원균검사

- (가) 검사시료는 400주 이상 이어야한다
- (나) 어지흡습법에 의한 육안 및 현미경 검경에 의하여 검사한다.
- (다) 멸균이 가능한 용기(약16×20cm)에 여지 2매를 얹고, 20ml 살균수를 부어 수분을 유지시킨 후 종묘 20본씩 치상하여 15~20℃에서 10일간(광조건 12시간 암조건 12시간) 배양기에서 배양후 검사한다. 다만, 현미경 검경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이 병조직에서 균분리 및 배양하여 검사한다.

(4) 선충검사

- (가) 검사시료는 200주 이상 이어야한다
- (나) 육안 및 현미경 검경에 의하여 검사한다.
- (다) 뿌리혹선충인 경우 뿌리혹형성 유무를 검사하며, 씩이선충인 경우 병든조직에서 씩 이선충의 유무를 검사한다.

『별표 2』

검사결과표시 및 봉인방법

1. 검사결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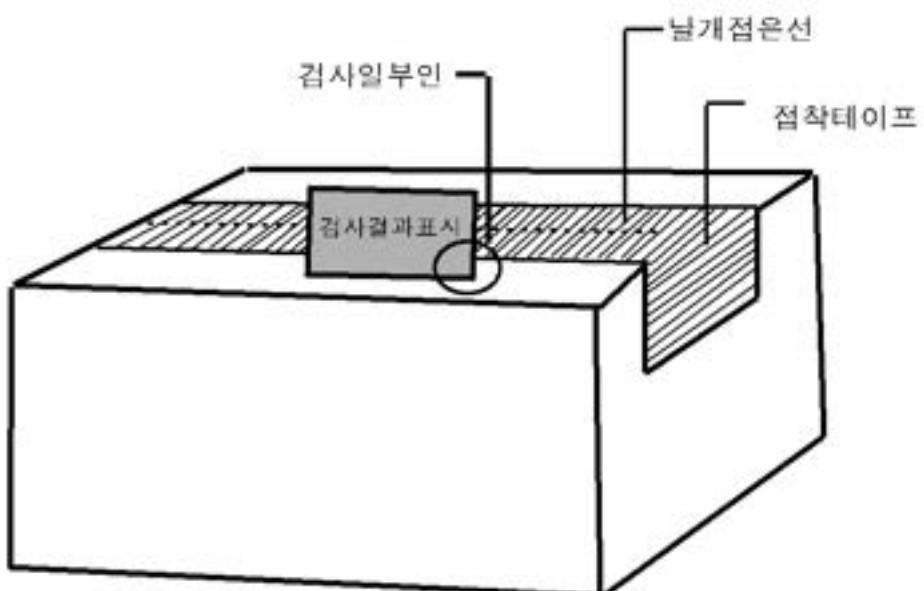
종자 · 종묘검사내역	
수 검 자 성명	
종자 · 종묘구분	
수 량(kg)	
검 사 결 과	
검 사 년 월 일	
검 사 기 관	

* 용지크기 : 105×150mm

2. 봉인재료 : 종이테이프 · 천접착테이프, PE테이프

3. 봉인방법

- 가. 검사합격품을 골판지 상자에 담은 후 상자뚜껑(양날개)을 덮고, 그 위에 봉인용 테이프를 부착한다.
- 나. 봉인된 테이프부분에 검사내역을 부착한 후 검사내역과 상자뚜껑이 반반씩 걸치도록 담당 검사원의 검사일부인을 속건성 불명잉크를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날인 · 봉인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 삼 종 자 검 사 성 적 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 소	(전화 :)		
신청수량	kg	용도	수출·내수	
검사월일				
검 사 원				
검 사 결 과				
구분		규격	기준(%)	검사결과
정립		해당없음	95.0 이상	
크기	대립종자	지름 5mm이상	95.0 이상	
	중립종자	지름 4mm이상 ~ 5mm미만	95.0 이상	
	소립종자	지름 4mm미만	95.0 이상	
개갑종자		해당없음	95.0 이상	
활력종자		해당없음	950.이상	
잡초종자		해당없음	0.1 이하	
병든종자	특정병	해당없음	1.0 이하	
	기타병	해당없음	3.0 이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인 삼 종 묘 검 사 성 적 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 소	(전화 :)		
신청수량	kg	용도	수출·내수	
검사월일				
검 사 원				

검 사 결 과

구분		규격	기준(%)	검사결과	합격여부
정 묘		해당없음	95.0 이상		
크기	길 이	14cm이상	95.0 이상		
	중 량	680g이상/ 1000본	95.0 이상		
병든묘삼	특정병	해당없음	0.01 이하		
	기타병	해당없음	1.0 이하		
특정해충 피해묘삼		해당없음	0.01이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전화번호 : 02-2165-6041)

문서번호 :

발송월일 :

수신:

참 조 :

일삼종자종묘검사 결과통보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인삼중자·종묘검사 증명서

인삼종자·종묘검사실시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삼종자·종묘검사증명서를 교부합니다

卷之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직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인삼종자·종묘검사 관리대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제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일삼종자·종묘검사 결과보고

※ 불합격자 명단 및 내역 : 별첨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5. 기타형태의 홍삼 검사기준

인삼산업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의 검사의 기준·방법의 규정에 의거 「기타형태의 홍삼」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2년 7월 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타형태의 홍삼」 검사기준

1. 품질검사

항목		검사기준
① 체형	머리	머리가 있어야 할 것
	몸통	몸통은 원형을 갖추되, 길이·흡집 및 균열정도는 제한없음
	다리	다리의 개수와 길이는 제한없음
② 수 분		15.0%이하
③ 조 적		내백 및 내공은 몸통길이의 2/3 이하인 것
④ 색 택		담적갈색·담황갈색·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을 띤 것
⑤ 표 피		황피, 백피, 응피, 피해삼 등이 전체표면적의 2/3이하인 것

- 위의 검사기준은 국내용 검사에 한함

2. 연근검사 및 표시검사

연근검사 및 표시검사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의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등급표시란은 "합격"으로 표시한다

3. 포장검사

기타형태의 홍삼의 지별, 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농림부고시 제2002-8호(2002.2.28)호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삼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기타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5-1호

인삼산업법 제1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 검사의 기준·방법에 의한 「기타형태의 태극삼」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타형태의 태극삼」 검사기준

1. 품질검사

직삼의 기준에 준하되, 머리·몸통·다리 및 다리의 잔뿌리까지 수삼원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근·포장 및 표시검사

연근·포장 및 표시검사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의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기타형태의 흑삼 검사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2-3호

인삼산업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타형태의 흑삼」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기타형태의 흑삼」 검사기준

1. 품질검사

항목	검사기준	
① 체형	머리	머리가 있어야 할 것
	몸통	몸통은 원형을 갖추되, 길이·흡집 및 균열정도는 제한없음
	다리	다리의 개수와 길이는 제한없음
② 수 분	15.0%이하	
③ 조 적	내백 및 내공은 몸통길이의 2/3 이하인 것	
④ 색 택	담흑갈색·흑다갈색을 띤 것	
⑤ 표 피	황피, 백피, 옹피, 피해삼 등이 전체표면적의 2/3이하인 것	

- 위의 검사기준은 국내용 검사에 한함

2. 연근검사 및 표시검사

연근검사 및 표시검사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별표3의2」 “검사의 기준·방법”의 개별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등급표시란은 “합격”으로 표시한다.

3. 포장검사

기타형태의 흑삼의 지별, 편급별 구분 및 포장단위는 농림부고시 제2002-8호(2002.2.28)호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삼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월 2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